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덴마크(The Kingdom of Denmark)
면적	42,933 km ² (자료원 : 덴마크 통계청, 2020 기준)
수도	코펜하겐(Copenhagen)
인구	5,830,000 명 (자료원 : 덴마크 통계청, 2020 기준)
민족(인종)	전체 인구의 96%가 북게르만계의 데인족
언어	공용어: 덴마크어/ 상용어: 영어
종교	78%가 덴마크 루터복음교(Danish National Lutheran Church), 이슬람교(4%), 기독교(3%), 가톨릭교, 침례교, 유대교 등(15%)
기후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 변화가 심함. 평균 기온: 0.8℃(1월), 19.5℃(7월) 연평균 강우량은 765mm이며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171일
국가원수	○ 국가 원수: H.M.Queen Margrethe II ○ 총리: Ms. Mette Frederiksen (사회민주당)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59-03-11 (자료원 : 외교통상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상표의 상호 등록에 관한 협정	1960-12-09	상표의 상호 등록	
특허권 상호 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63-10-09	특허권 상호 부여 및 보호	
사증 면제 협정	1969-09-05	사증 면제	
개발 차관 협정	1969-12-04	개발 차관	
국제 운수에 관한 선박 및 항공기 운항 상호 면세 협정	1975-09-18	국제 운수에 관한 선박 및 항공기 운항 상호 면세	
이중 과세 방지 협정	1977-10-11	이중 과세 방지	
해운 협정	1980-01-09	해운산업	
상사중재 협정	1982-10-11	상사중재	
재 입국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1982-12-15	재 입국 사증 면제	
투자 보장 협정	1988-06-02	투자 보장	
교육 인적 개발 양해각서	2006-11-20	교육 인적 개발	
사회보장 협정	2010-03-11	사회보장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	2010-10-28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녹색성장동맹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2011-05-16	녹색성장동맹 수립	
해운협력 양해각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2012-05-23	해운협력, 과학기술협력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2018-10-19	P4G 정상회의, 코펜하겐	

<자료원 : 외교통상부>

한국교민 수

9,581 명 (자료원 : 외교통상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2020년 4월 2일에는 양국 정상인 전화 통화를 갖고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연기와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축적한 방역 및 치료 경험에 대한 적극 공유 의사를 밝혔으며 덴마크 의료 장비 공급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한국 진단키트와 방역 물품 수입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9년 5월 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와 메리 왕세자비는 한국과 덴마크 양국 수교 60주년과 '상호 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문화사절단과 함께 방한하였다. 사절단에는 45개 이상의 덴마크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헬스케어, 식품,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분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었으며 메리 왕세자비는 상호 문화의 해 덴마크 측 후견인(patron) 역할을 수행 중으로 한국 측 후견인으로는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이 수행함

문대통령은 글로벌 민간협력 이니셔티브인 'P4G'를 통해 양국이 기후변화 및 녹색 경제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공조해온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프레데릭 왕세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밝힘.

2018년 10월 19~21일 문재인 대통령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참석 및 한국-덴마크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방문 기간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왕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마그레테 2세 여왕을 면담하였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또한 여타 정상들과 함께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왕국 총리가 주최한 「제1차 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문 대통령과 라스무센 총리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굳건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다양하며 유익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문 대통령과 라스무센 총리는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환영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과 라스무센 총리는 최근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긍정적으로 진전된 것을 더욱 강조하고, 제약·바이오기술, 디지털 의료, 복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 중 양국 간 순환경제 분야 협력 MOU가 서명되었다.

문 대통령과 라스무센 총리는 한국과 덴마크 양국이 경제협력, 과학,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로서 북극 문제에 대해 긴밀하고 강력하게 협력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번 덴마크 방문 계기에 양국 간 극지 연구 및 드론을 포함한 자율이동체 분야에서 MOU가 서명되었다.

또한, 라스무센 총리는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해 개최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덴마크 측의 일관된 지지 및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경제

선박의 비중이 높은 대덴마크 수출은 2019년 선박 물량 감소로 규모 면에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자동차, 철강, 고무, 의료용품 등의 수출 증가로 다양한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수입은 의료용품, 전자기기 수입이 두드러지면서 계속 증가세 유지.

2020년에는 코로나 19 진단키트 및 방역제품에 대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재, 코스메틱 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분야 등에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3월 양국 간 해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한-덴마크 해운협력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양국 간 해운협력 MOU를 체결하고, 2013년 부산에서 제1차 해운협력 회의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북극 항로 활용 및

크루즈산업 육성, 선박 금융기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5월 만료 예정이었던 한-덴마크 해운협력 MOU를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참고로 덴마크는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AP Moller Maersk)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선진 해운그룹(CSG) 등 국제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라스무센 총리가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했는데, 북극 항로 활용, 의료, 해양안전 등 다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화

문화적으로 한국과 큰 이슈 및 현안 사항은 없으나 K뷰티 제품 및 K-Pop 관련 상품이 덴마크 시장에 진출하면서 점차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방탄소년단 등 K-Pop을 좋아하는 계층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K뷰티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는 계획되었던 문화행사가 코로나 19로 연기되었지만 하반기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농수산물, K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 상호 문화교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상호 문화의 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5월 아스거 온(Asger Jorn) 덴마크 작가 전시회, 안데르센과 코펜하겐 1819 전시회 등이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덴마크에서는 난타공연, 목향 공연 등을 포함하여 한국문화 페스티벌에서 비보이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	2.34	3.25	2.04	2.39	2.37
명목GDP (십억\$)	302.7	312	329.9	352.1	348.1
1인당 GDP (PPP, \$)	47,651.25	48,888.61	50,570.14	52,278.61	53,881.85
1인당 명목 GDP (\$)	53,478.5	54,665.22	57,380.2	60,897.23	59,795.27
정부부채 (% of GDP)	39.77	37.2	35.48	34.26	32.99
물가상승률 (%)	0.23	0.02	1.06	0.71	1.3
실업률 (%)	6.2	6.2	5.7	5	5
수출액 (백만\$)	95,493.7	95,334.4	102,541.3	109,708.5	110,782
수입액 (백만\$)	85,655	85,519	92,989.2	102,601.9	97,826.9
무역수지 (백만\$)	9,838.7	9,815.4	9,552.1	7,106.6	12,955.1
외환 보유고 (백만\$)	63,020.89	61,864.71	72,577.1	68,304.01	63,680.49
이자율 (%)	0	0	0	0	0
환율 (자국통화)	6.73	6.73	6.6	6.31	6.67

〈자료원 : IMF, 덴마크 통계청, World Bank, GTA〉

경제 동향

덴마크의 경제는 개인소비와 사업투자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임금 증가 또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민간 사업체에서 수요가 늘어나(특히 무역 및 운송, 비즈니스 서비스, 건축 분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4.96%를 예상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덴마크 정부는 6.7% 대로 급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2.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19년에 이어 2020년은 연평균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로 2020년 5월에 재발표된 덴마크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격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류(선박용 엔진, 펌프, 밸브 등), 의약품(인슐린 등), 광물연료, 의료기기, 유제품을 필두로 제품 대부분에서 수출이 유지되는 등 EU 국가 내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어 2020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경제 전망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으로 덴마크 내수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수출 위주의 덴마크 경제는 주요 수출국이 대부분 주변 EU 국가로 EU의 코로나 경기침체 극복 여부가 덴마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6월 진보성향을 띄고 있는 사회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선거 이후 구성된 내각은 녹색성장, 이민규제 완화, 복지확대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여러 정당의 합의하에 정책이 결정되는 덴마크 정치 특성상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신정부의 힘을 실어주자는 정치권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덴마크 정부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5,591,593,041
2	Special Categories	10,496,460,793
3	스웨덴	10,436,203,829
4	노르웨이	6,000,694,208
5	영국	5,480,605,339
6	미국	5,218,563,502
7	네덜란드	3,691,765,324
8	중화인민공화국	3,239,729,598
9	프랑스	2,696,622,092
10	폴란드	2,553,270,808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4,172,499,174
2	Special Categories	11,100,894,585
3	스웨덴	10,585,877,539
4	노르웨이	5,887,766,190
5	영국	5,623,812,460
6	네덜란드	4,992,015,126
7	미국	4,654,490,936
8	중화인민공화국	3,348,235,815
9	프랑스	2,854,168,473

10	폴란드	2,547,330,816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Special Categories	15,318,061,110
2	독일	14,449,904,451
3	스웨덴	10,798,533,843
4	영국	7,531,767,039
5	노르웨이	5,905,642,050
6	미국	4,455,721,156
7	네덜란드	3,775,594,706
8	중화인민공화국	3,263,954,017
9	프랑스	3,109,441,624
10	폴란드	2,799,544,005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Special Categories	17,171,045,933
2	독일	16,771,599,830
3	스웨덴	11,785,542,975
4	미국	9,050,862,673
5	영국	7,483,040,283
6	노르웨이	6,457,805,308
7	네덜란드	4,922,559,934
8	중화인민공화국	4,451,719,510
9	프랑스	3,921,150,106
10	폴란드	3,299,570,85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Special Categories	19,344,545,336

2	독일	15,548,526,181
3	스웨덴	11,350,924,282
4	미국	11,315,854,590
5	영국	6,738,204,629
6	노르웨이	6,376,686,415
7	네덜란드	5,580,039,898
8	프랑스	4,134,023,956
9	중화인민공화국	3,803,860,817
10	폴란드	3,587,434,37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7,459,252,997
2	스웨덴	10,498,740,669
3	네덜란드	6,843,373,535
4	중화인민공화국	6,375,315,508
5	노르웨이	3,992,318,322
6	영국	3,855,358,238
7	이탈리아	2,989,042,572
8	폴란드	2,845,744,253
9	벨기에	2,682,191,011
10	프랑스	2,607,776,920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8,199,813,562
2	스웨덴	10,200,036,701
3	네덜란드	6,692,344,607
4	중화인민공화국	6,435,820,180

5	노르웨이	3,533,031,010
6	영국	3,457,061,211
7	폴란드	3,265,919,423
8	이탈리아	2,984,125,606
9	벨기에	2,792,519,117
10	프랑스	2,601,834,67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9,596,175,023
2	스웨덴	10,920,456,509
3	네덜란드	7,069,939,772
4	중화인민공화국	6,751,357,447
5	노르웨이	4,591,082,460
6	폴란드	3,649,884,494
7	영국	3,624,525,917
8	이탈리아	3,234,054,542
9	벨기에	2,885,920,536
10	프랑스	2,842,212,04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23,125,032,659
2	스웨덴	12,031,101,128
3	네덜란드	8,038,889,765
4	중화인민공화국	7,843,429,347
5	노르웨이	5,203,288,905
6	폴란드	4,235,710,299
7	영국	3,740,282,840
8	이탈리아	3,401,244,526
9	프랑스	3,351,107,053

10	벨기에	3,068,701,007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21,189,933,319
2	스웨덴	11,714,933,378
3	네덜란드	7,741,680,423
4	중화인민공화국	7,059,270,109
5	폴란드	4,129,548,207
6	노르웨이	4,100,082,842
7	영국	3,708,223,018
8	미국	3,351,580,631
9	프랑스	3,298,526,710
10	이탈리아	3,272,638,383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795,080,873
2	850231	풍력의 것	3,303,414,112
3	300490	기타	2,202,885,356
4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1,874,883,219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778,976,823
6	271019	기타	1,731,126,269
7	430110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1,604,414,331
8	350790	기타	1,081,588,083
9	210690	기타	991,366,180

10	020329	기타	939,369,119
----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292,708,990
2	850231	풍력의 것	3,422,809,544
3	300490	기타	2,236,228,476
4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1,728,980,827
5	271019	기타	1,371,813,335
6	020329	기타	1,248,363,197
7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186,194,940
8	841290	부분품	1,135,237,140
9	350790	기타	1,117,728,245
10	210690	기타	979,384,644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398,801,836
2	300490	기타	3,651,033,215
3	850231	풍력의 것	2,057,577,394
4	271019	기타	1,609,458,249
5	841290	부분품	1,459,327,077
6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348,348,088
7	020329	기타	1,195,120,627
8	350790	기타	1,189,173,321
9	430110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1,104,078,478
10	010391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1,100,933,122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995,559,864
2	300490	기타	7,169,919,548
3	300439	기타	4,606,856,861
4	271019	기타	2,104,176,378
5	850231	풍력의 것	1,748,535,403
6	300431	인술린을 함유한 것	1,404,842,931
7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246,131,741
8	350790	기타	1,241,039,742
9	293712	인술린과 그 염	1,166,903,930
10	020329	기타	1,137,718,35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4,235,839,066
2	300490	기타	7,042,906,856
3	300439	기타	6,404,087,247
4	850231	풍력의 것	3,024,641,097
5	271019	기타	1,887,854,588
6	841290	부분품	1,723,868,735
7	020329	기타	1,445,451,175
8	350790	기타	1,202,042,466
9	300431	인술린을 함유한 것	1,198,653,393
10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168,403,001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771,443,144
2	300490	기타	2,025,751,176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945,332,978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68,605,043
5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1,560,510,511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95,816,790
7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080,607,832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930,390,215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797,355,041
10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55,164,596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124,610,803
2	300490	기타	2,071,828,083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964,264,207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360,258,879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299,713,663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87,567,861
7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1,020,551,921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1,011,369,549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892,781,763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787,047,922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2,123,427,481

2	271019	기타	2,077,704,490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048,916,226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002,106,322
5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1,578,404,704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280,761,949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1,117,075,642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42,783,585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1,014,000,278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732,513,204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3,255,330,882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573,267,731
3	271019	기타	2,565,448,248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378,977,791
5	300490	기타	2,242,552,946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388,851,646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184,441,096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23,047,955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10,862,858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90,014,91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271019	기타	2,561,172,935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409,489,633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148,795,094
4	300490	기타	2,079,045,327
5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375,860,729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38,322,574
7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104,644,178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84,099,997
9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883,493,971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26,630,926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333	736	-403
2017	1,496	721	775
2018	1,094	793	301
2019	448	893	-445
2020	294	623	-32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4	전기자동차	36	0	36
2	7411	승용차	133	0	133
3	6131	중후판	14	0	13
4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39	9	30
5	2140	합성수지	40	0	39
6	6152	철구조물	27	1	26
7	7112	펌프	5	32	-27
8	3203	타이어	11	0	10
9	6137	도금강판	7	0	7
10	8343	인쇄회로	7	0	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14	전기자동차	51	0	51
2	7411	승용차	38	0	38
3	6131	중후판	25	0	25
4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24	6	18
5	2140	합성수지	20	0	20
6	6152	철구조물	18	1	17
7	7112	펌프	11	37	-26
8	3203	타이어	6	0	6
9	6137	도금강판	5	0	5
10	8343	인쇄회로	5	0	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0	177	-178
2	7112	펌프	5	32	-27
3	0243	낙농품	0	32	-32
4	4490	기타섬유제품	0	39	-39
5	7512	밸브	5	36	-32
6	0242	꿀및로알제리	2	15	-14
7	0221	가축육류	0	39	-40
8	0245	단백질류	0	21	-22
9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	30	-29
10	0114	곡분	0	14	-1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2	128	-126
2	7112	펌프	11	37	-26
3	0243	낙농품	0	31	-31
4	4490	기타섬유제품	1	26	-25

5	7512	밸브	4	23	-19
6	0242	꿀및로알제리	1	18	-17
7	0221	가축육류	0	18	-18
8	0245	단백질류	0	16	-16
9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3	16	-13
10	0114	곡분	0	14	-1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EU-EEA FTA	EU, EEA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95-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04		
EU-남아공 FTA	EU, 남아공	2000-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2-04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EU-카메룬 FTA	EU, 카메룬	2009-02-28		
EU-한국 FTA	EU, 한국	2010-10-06	2011-07-01	
EU-이라크 FTA	EU, 이라크	2012-05-11	2012-08-01	무역부문만 발표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	2012-06-29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 (2013. 8. 1.)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2013.10. 1.) 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	2012-07-26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 8. 1.), 페루 (2013. 3. 1.), 에콰도르 (2017. 1. 1.)
EU-콜롬비아 FTA	EU, 콜롬비아	2012-07-28	2013-08-01	
EU-페루 FTA	EU, 페루	2013-07-28	2013-03-01	
EU-과테말라 FTA	EU, 과테말라	2013-12-01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EU-에콰도르 FTA	EU, 에콰도르	2014-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EU-SADC FTA	EU,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 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2018. 2. 4.))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협정을 대체
EU-코트디부아르 FTA	EU, 코트디부아르	2016-09-03		
EU-캐나다 FTA	EU, 캐나다	2016-10-30	2017-09-21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1-02	2018. 12. 양측 의회 비준 완료 2019. 2. 1. 발효
EU-싱가포르 FTA	EU, 싱가포르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발효 전망)
EU-베트남 FTA	EU, 베트남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발효 전망)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EU-미국 FTA	EU, 미국	보류	
EU-뉴질랜드 FTA	EU, 뉴질랜드	협상 중	
EU-AEAN FTA	EU, ASEAN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타진 중	
EU-태국 FTA	EU, 태국	잠정 보류 상태	직전 협상 2014. 4.
EU-인도 FTA	EU, 인도	잠정보류 상태	
EU-인도네시아 FTA	EU, 인도네시아	직전 협상 2018. 7.	
EU-필리핀 FTA	EU, 필리핀	직전 협상 2017. 2.	
EU-미얀마 FTA	EU, 미얀마	직전 협상 2016. 12.	
EU-멕시코 FTA	EU, 멕시코	2018. 4. 21. 협상 완료	비준 진행 중
EU-호주 FTA	EU, 호주	1차협상 2018. 7.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 (MERCOSUR)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8. 7.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개시 : 2017. 2.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 2013. 10. 12.)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4809.90, 4811.59, 4811.90,	중량 감열지 (Heavy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조사중)	2019-10-10
2	72~73류 일부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8-03-26
3	4811.90, 4809.90, 4816.90, 4823.90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규제중)	2016-02-18
4	7225.11, 7226.11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4-08-14
5	7312.10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9-08-12
6	2804.69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6-04-20
7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반덤핑(규제중)	2001-06-0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TBT(기술장벽)를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 (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

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 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다.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 중인 화장품 제품 관련 규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역외 기업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역내 법적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자가 제품의 책임자가 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제품이 EU 현지 브랜드 또는 역내 유통사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통사가 책임자가 된다. 참고로 지정된 책임자는 제품 시장 출시 전, EU 집행위 사전신고를 비롯해 불량제품 발생 시 시장철수 및 리콜 등 규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 업체의 경우, 역내 책임자(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이 대행업체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면 되는데, 필요서류로는 ISO 인증서 사본, 제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등이 있다.

CPNP 인증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KOTRA 뉴스를 참고할 수 있겠다.

- CPNP 정보 링크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9902>

5) e-Mark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써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

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는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는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는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 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몰타

◦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올해 9월 23일까지 수렴한 후 2021년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 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이번 발표된 제도가 내년 법제화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우리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7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클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덴마크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동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과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은 한-EU FTA에 따라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전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

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0년 1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vat_rates_en.pdf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세관 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한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는 수입 신고(입항 전 또는 직후 모두 가능) → 입항 → 하선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심사 → 물품 검사 → 세금 납부의 순이다. EU 국가 이외에서 제품이 수입돼 덴마크 국경에 도착할 경우 운송업자는 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제품, 원산지, 수량 등이 명기된 수입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련 서류를 문서상으로 처리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EU 세관은 안전강화와 목표서류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입물품 신고의 전자처리를 의무화했다. 개정된 통관지침에 따라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사실의 신고 및 통관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는 세관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숙지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상태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물품이 세관 도착 시, 전자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세관에서 바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위험조사가 그 당시에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지연된다. 통관 신고자가 이 전자세관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경우 시스템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통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와 동시에 부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류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수입업자가 세관 당국에 등록돼 있다면 자신이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즉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며, 관세 등 세금 납부는 그 다음 달 16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등록된 수입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관 시 이를 납부해야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 등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고 있다.

○ SKAT(세관)

- 주소(관세 관련 우편물 송부주소): Nykøbingvej 76 Bygning 45, 4990 Sakskøbing
- 전화: (+45) 7222 1212
- 홈페이지: <https://www.skat.dk/skat.aspx?oid=2362&lang=us&x=2607>

통관 시 유의사항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 통관의 경우, 한-EU FTA 협약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Modul Transport A/S

주소	Avedøreholmen 46, 2650 Hvidovre
전화번호	(+45) 4342 6800
이메일	lj@modultransport.dk

홈페이지	http://www.modultransport.dk
------	---

o DSV

주소	Hovedgaden 630, DK-2640 Hedehusene
전화번호	(+45) 4320 3040
이메일	info@dsv.dk
홈페이지	http://www.dsv.com

o Green Carrier Freight Services Denmark A/S

주소	Skagerrakvej 7, 2150 København
전화번호	+45 4488 1020
이메일	louise.lauridsen@greencarrier.dk
홈페이지	https://freightservices.greencarrier.com/office/greencarrier-freight-services-denmark-3/

<자료원 : 각 회사 홈페이지>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덴마크 외무부의 산하기관인 Invest in Denmark에서 덴마크에 투자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요구에 맞춘 컨설팅 및 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지원 제도는 존재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덴마크 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덴마크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법적 지위, 권리, 의무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덴마크의 투자 유치 정책은 내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나 외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덴마크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된다.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상 제한이 없으며 세제상으로도 동등하게 취급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내국 기업과 동일한 법인 세율인 22%를 적용한다(2019년 기준). 이는 EU 평균 법인세율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나, OECD(21.94%)나 글로벌(23.03%) 평균세율(2019년 기준)에 비해 서는 낮거나 비슷한 편이다(자료원: OECD).

덴마크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은 일반적인 장려 정책이 아닌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보조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 경우에만 한해서 이루어지며, 활동 보조는 주로 수출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산업 부문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된 경제 기반 위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대부분의 장려 정책은 저리의 대출 혹은 정부 보증과 같은 금융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당국과 협의해 저가로 토지를 제공받거나 혹은 신 공업 단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참고로 오덴세를 비롯한 지방정부(Kommune, Municipality)에서는 투자진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내국 기업과 동일하게 R&D 자금 등을 지원해주거나(벤처기업일 경우) 투자가 및 상용제품 벤더를 발굴해주는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오덴세 시 정부는 오덴세 로보틱스라는 클러스터 조직을 설립하여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이 시장에서 신속히 상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파이낸싱이 가능하고 R&D 분야 내 덴마크 정부의 펀딩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세제 혜택 등)를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덴마크 정부는 R&D 자금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 세제 혜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은 R&D 자금 집행이 발생한 연도에 전부 공제를 하거나, 해당 연도를 포함해 향후 4년간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손실이 발생했다면, R&D 비용과 관련해 ‘연간 최대 2,500만 덴마크 크로네 x 법인세율(2019년의 경우 22%를 적용해, 최대 550만 덴마크 크로네)’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바이오테크, 제약, 생활과학, 환경, 에너지, ICT, 식품, 농업 및 운송 부문에서 특별 R&D 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 금지 분야: 덴마크는 모든 업종을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는 없다.
- 제한 분야: 석유 시추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제한 분야가 있지만, 이것은 외국인 투자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 업체에도 동일하

게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제한분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덴마크에는 별도의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 Danish Food Cluster

위치	오르후스
임차료	비즈니스 유형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기관: 오르후스 지방정부 ◦ 연락처: info@danishfoodcluster.dk

◦ Odense Robotics

규모	400,000m ²
위치	오덴세
임차료	1제곱미터당 월 50덴마크 크로네부터 다양하게 존재한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기관: 오덴세 지방정부 ◦ 연락처: joni@odense.dk
비고	약 25년 전 오덴세 조선소에서 SDU(South Denmark University)와 공동으로 로봇을 개발하던 것을 계기로 SDU 내 Maersk McKinney Moller Institute, DTI(Danish Technological Institute, 비영리 R&D 및 인증기관) 내 로봇센터가 설립되었다. 오덴세 조선소 폐업 조짐이 보이자, 관련된 로봇 기업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2018년 12월 기준, 110개 이상의 로봇 기업이 밀집(2,600명 이상의 직원)과 10개 이상의 협업 연구기관이 포진한 클러스터로 성장했다. 2019년까지 클러스터 내 기업 수익은 2016년 대비 40~50%, 2020년까지 종업원 수는 60%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서는 독일 Schunk 등 외국 기업이 오덴세에 동지를 틀기 시작하는 등 진출 외국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 Biopeople

규모	500,000m ²
위치	코펜하겐
임차료	1제곱미터당 월 60덴마크 크로네부터 다양하게 존재한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기관: 코펜하겐 지방정부 ◦ 연락처: info@biopeople.ku.dk

비고	2000년 코펜하겐-말뫼(덴마크와 스웨덴의 경계)를 잇는 교량이 완공됨에 따라 해당 지역(Oeresund)의 경제권이 단일화되고 있으며, 특히 IT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 지역을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로 부르기도 하는데, 유럽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급부상했다. 2018년말 기준, 바이오테크 기업 80개, 제약업체 20개, 의료기술 기업 200개(medtech companies)가 집적해 있고, 7개의 사이언스 파크, 10개의 인큐베이터(이 중 3개가 생명과학에 포커스), 9개의 대학, 28개의 병원이 입지해 있다. 덴마크는 바이오테크 분야에 Novo Nordisk(인슐린), Lundbeck(중추신경계 치료제), Leo Pharm(건선 치료제) 등 세계 최고의 바이오 제약 기업을 배출했다.
----	---

<자료원 : www.danishfoodcluster.dk, www.odenserobotics.dk, www.biopeople.eu>

주요 지역별 여건

◦ (참고) 그 외 지자체 산업 클러스터

덴마크는 대부분 공업용지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공장부지 결정은 지자체가 하게 된다. 지자체들은 특정 지역에 서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해당 지역 내 공장 부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부지 확보의 용이성,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공장들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코펜하겐 외곽 지역인 Glostrup, Brondby, Ballerup 지역이 공장 설립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많은 외국 기업 생산 공장 및 판매 사무소도 이곳에 설립돼 있다.

Herning 및 Ikast시를 포괄하는 지역의 섬유 디자인 산업 클러스터, Horsens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 및 농업용 철물산업 클러스터, Esbjerg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여행 산업 클러스터, Funen 지역의 묘목 산업 클러스터, 유틀란드 반도 동부를 중심으로 한 운송 산업 클러스터, 유틀란드 반도 중부를 중심으로 한 풍력발전 산업 클러스터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 및 정부의 산업 정책과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특정 산업에 특화, 발전한 지역들이다.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3,616.13	235.3	3,748.81	162.64	930.21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9,420.01	10,110.49	9,518.26	-1,106.95	16,045.1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13	0	1,930	14	844
2019	10	2	4,358	11	3,204
2020	5	0	1,660	5	1,35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1	0	1,442	2	3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	0	488	12	48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1,951	1	1,942
도매 및 소매업	8	0	2,400	9	1,2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7	1	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	------	-------	------	------	------

도매 및 소매업	5	0	1,660	5	1,354
----------	---	---	-------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Hi-Air Korea Ltd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 기업 Novenco A/S 인수
업종	해운 부품
취급분야	환기 시스템
모기업명	Hi-Air Korea Co.Ltd

◦ Cell Biotech Int. A/S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현지 영업소 설립
업종	바이오텍
취급분야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모기업명	Cell Biotech

◦ Schades A/S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 기업 인수
업종	제지
취급분야	실내 장식 제지
모기업명	Hansol Paper

◦ 삼성전자 덴마크 리서치 센터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리서치 센터 설립
업종	연구개발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Contera Pharma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제조판매법인
업종	바이오제약
취급분야	중추신경계 바이오제약
모기업명	부광약품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A/S(주식회사)와 ApS(유한회사) 등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덴마크 기업국(Danish Business Authority)(www.danishbusinessauthority.dk)에 접속하여, 하단에 The Central Business Register를 클릭하면 온라인 등록사이트로 연결되는데(덴마크어로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등록이 가능하다. 접수 이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등록이 완료되며, 즉시 영업이 가능하다.

지사

모회사가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호주에 등록돼 있다면 덴마크 내 지점 개설이 가능하며 덴마크 기업국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들 국가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모회사는 상호인증서(statement of reciprocity)를 등록 서류와 함께 DBA로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지점을 개설할 경우, 덴마크뿐만 아니라 모회사 소재국에서도 과세대상이라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 덴마크와 모회사 소재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맺어져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적용: 본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덴마크에서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형태
- 등록: Danish Business Authorities에 등록 필요
- 자본금: 요구사항 없음
- 책임: 지사의 본사가 전적으로 책임
- 경영: 최소 1명의 지사장 등록 필요
- 회계: 지사의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본사의 연간 회계 보고서 사본 제출 필요(회계연도가 끝난지 5개월 이내)
- 세금: 덴마크 지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22%
- 적용법: The Danish Companies Act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시장조사 등 제한된 범위 내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활동을 할 경우 지점을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 적용: 덴마크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사용
- 등록: 등록 불요
- 자본금: 요구 사항 없음
- 책임: 외국의 모회사
- 경영: 요구 사항 없음
- 회계: 연간 회계보고서 준비 불요
- 세금: 덴마크 내에서 판매 및 A/S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항구적인 설치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음
- 적용법: 적용되는 법 없음.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 A/S: 주식회사
 - 적용: 대규모 및 중간 규모 회사에 적합하며, 덴마크 주식 시장에 등록 가능
 - 등록: Danish Business Authorities에 등록 필요
 - 자본금: 최소 500,000덴마크 크로네(또는 해당 수치에 상응하는 EUR)
 - 책임: 출자 주식의 가치 범위 내
 - 경영: 반드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최소 1명의 사장(Executive Board)이 필요
 - 회계: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 세금: 법인세 22%
 - 적용법: The Danish Companies Act

유한책임회사

- ApS: 유한책임회사
 - 적용: 중소 규모의 회사에 적합
 - 등록: Danish Business Authorities에 등록 필요
 - 자본금: 최소 50,000덴마크 크로네(또는 해당 수치에 상응하는 EUR)
 - 책임: 출자 주식의 가치 범위 내
 - 경영: 이사회 또는 사장이 운영 가능하며, 양자가 모두 있어도 무방
 - 회계: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 세금: 법인세 22%
 - 적용법: The Danish Companies Act

개인사업자

외국 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거의 들지 않는(형식적인 차원에서 1덴마크 크로네, 향후 자본금을 50,000덴마크 크로네까지 확대해야 함) 스타트업 사업체 설립은 불가하다.

- (참고) 덴마크 정부 창업자(스타트업) 프로그램
 - 외국인이 사업 아이디어를 덴마크 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에 제출하면, 고용창출 등 덴마크 경제에 공헌 및 혁신적인 사업모델(하이테크/제조업체 선호)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6주 소요) 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레스토랑, 일반 도소매점, 무역업, 컨설팅 서비스, 여행업은 원천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 덴마크 기업청 담당자 확인 결과, 2015~2017년까지 파일럿 형태로 연간 최대 50명에게 비자를 허가해줄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허가 건수는 이를 크게 밑돌았다고 한다. 2018년 정식 프로그램으로 승격되어 허용 건수를 75건으로 확대하였으나 2019년까지 실제 승인 건수 61건으로 확대건수를 하회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49건에 그치고 있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Kromann Reumert

전화번호	+45 7012 1211
주소	Sundkrogsgade 5 DK-210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www.kromannreumert.com

이메일	jbh@kromannreumert.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무법인

◦ Deloitte

전화번호	+45 3610 2030
주소	Weidekampsgade DK-230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www.deloitte.dk
이메일	info@deloitte.dk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회계법인

<자료원 : 각 회사 홈페이지>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덴마크 기업법 조항 14에 따라, 철수,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본회사란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인들이다. 부채를 정리할 수 없는 법인들은 파산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합병이나 분사 등과 관련된 청산도 기업법 조항 15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래 기술한 절차는 법인 법규 조항 14에 따라, 지급성명서 기업 해산(Opløsning ved betalingserklæring), 자산과 부채의 정산(Likvidation), 강제 해산(Tvangsopløsning) 세 가지 방법으로 대별된다. 법인 철수 시 부가가치세와 A 세금제도에서 탈퇴해야 하며 indberet.virk.dk(Webreg 디지털 등록)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 변호사를 선임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지급성명서(Betalingserklæring) 기업 해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주주)들이 모든 채무를 청산했다고 기업청(Erhvervsstyrelsen, The Danish Business Authority)에 신고하면 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성명서는 모든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들의 성명과 주소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세금이 체류 되지 않았다는 국세청 발급 확인서를 동봉해야 한다. 기업청이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성명서가 제출돼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급성명서는 국세청 확인서와 함께(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이) 서명한 지 2주 이내에 기업청에 제출돼야 한다. 국세청의 확인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 성명서 제출 시일이 늦어질 경우에는 국세청 확인서가 차후에 제출될 것임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늦어도 4주 안에 제출돼야 한다. 법인의 해산이 기업청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됐으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성명 시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차후에 드러날 경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자들이 개인적, 무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 청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어떤 형태로 기업을 청산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는 청산인들을 임명해야 한다. 기업청에 신고가 된 즉시 법인의 해산은 청산인들의 책임이다. 이사회나 경영진은 더이상 법인의 대표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 청산인을 지정하는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성인이어야 하며 후견인일 수 없다) 청산인은 언제든지 청산인을 임명한 자에 의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은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청산 중”이란 명칭을 법인명 사용 시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청산 결정이 된 후 2주 안에 기업청에 청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virk.dk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고 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청산 결의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청산인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청산에 대한 서신을 발송해야 한다. 청산은 디지털 신고 Webreg(indberet.virk.dk)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기업청은 청산 신고를 받은 후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며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청산인에게 신청하도록 독려한다. 채권자들은 3개월 내, 요구사항을 접수시켜야 한다. 청산인은 최소한 3개월이 지난 후에 법인을 완전히 청산시킬 수 있다. 채권자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산인은 등기 서신으로 채권자에게 4주 이내에 법정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법인이 청산 절차 중에 있어도, 배당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청산잉여금은 채권자들에게 부여된 3개월이 지난 후 지급이 가능하다. 단,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 법인 법에 의거해 청산잉여금을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정확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 자본소유주들이 청산이 완료되기 전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빼낼 수 있지만, 법에 의해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청산잉여금이 지급된 후 주주총회 시 청산인이 준비한 청산회계보고서를 주주들이 검토 후 확인함으로써 청산절차가 마무리된다. 청산 절차 마무리 후 2주 안에 청산인은 기업청에 청산종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청산회계보고서 및 주주총회결의문을 같이 제출해야 하고, 기업청은 이후 법인이 청산됐다고 기록한다. 청산절차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장기적으로 이뤄질 경우, 여타 법인과 마

찬가지로 매년 회계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강제해산

기업청은 다음의 경우 파산법원에 법인의 강제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인이 합법적인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회계사가 없는 경우, 기업청에 매년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청의 이 같은 결정은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식화해야 하며 법인의 명칭은 반드시 “강제해산 중”이라고 같이 표기되어야 한다. 파산법원은 이에 따라 청산인이나 회계사를 임명한다. 청산인은 법인 경영진을 대신하며, 경영진은 더 이상 법인을 경영할 수 없다. 단, 경영진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청산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파산법원은 법인의 경영진 및 주주를 출두시켜 어떤 식으로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법원에 출두 시 경영진은 법인 재설립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보통 홈페이지 www.virk.dk 로 안내). 단, 법인은 3개월 이내에 재설립을 시도해야 하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해산 중에 있었을 경우에는 재설립을 시도할 수가 없다.

◦ 지사(Branch Office) 및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철수

지사 철수 시 회사등록번호가 삭제되며 덴마크 내에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지사를 운영할 수 없다. 지사는 기업청의 전산 등록 시스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 삭제된다.

- 기업청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 지사에 더 이상 지사장이 없고 기업청에서 규정한 시일 내에 새 지사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 지사의 외국 본사 연간 회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사의 소유자가 EU 또는 EEA 국가(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거주자가 아닌 관계로 덴마크 내에서 지사의 자산에 대해 총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

지사를 철수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www.virk.dk 에 접속해 Lukke virksomhed 를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하거나, 정식 서신을 anmeldelse@virk.dk 기업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의 양식을 사용해 A 세금제도에서 탈퇴하면 된다. 삭제 후 외국 본사가 지사 재설립을 요청할 경우 기업청의 규정에 따라 재설립이 가능하다. 단, 지사 소유주가 정식으로 권한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외국 본사는 새 지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삭제된 지사를 재설립할 수 없다.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6.80덴마크 크로네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5,875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15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8.2
비고	덴마크는 최저 시급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 없으며, 직업군에 따라 상이하다. 노사 합의에 의해서 실질적인 최저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데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 임금수준은 시간당 39.3달러로 간부직은 65달러, 세일즈맨은 44달러, 인턴은 17달러가 적용되는 등 직종과 경력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자료원 : 덴마크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Funktionaerloven이라는 임금노동자 법규를 따라 계약을 한다. 덴마크 내 피고용인들은 대부분 기술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회원으로 임금,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연금 등 주요 노무 현황은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Collective Bargain)이 이뤄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공식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 노사분규는 드물게 발생하는 편이나 2018년에는 공공분야 노동자들의 노사분규가 발생하 파업으로 이어졌고 2019년은 SAS 조종사들의 파업 발생하였으나 이후로는 2020년 상반기까지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단체 계약(Collective Bargain)에 의해 주당 5일, 37시간 근무가 규정돼 있다(계약 내용에 따라, 조정도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주당 근무시간이 4개월 평균 48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 야간 근로자의 경우 매 38시간 근무 시 2시간의 별도 유급 휴가 권리가 부여된다.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치를 밝히기 어렵다.

고용인 연합(EMPLOYEE'S ASSOCIATION)의 회원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overtime)의 계산은 첫 3시간 동안은 150%를 지급하고 그 이후는 200%를 지급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에는 200%를 지급한다.

휴가

법적으로 연간 5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단체교섭의 경우 연간 6~7주까지 존재한다. 휴가는 매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이 된다. 모든 피고용인은 공휴일도 임금이 지불되며, 휴가 및 휴가비 지급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피고용인은 법에 의해 연간 5주의 휴가(많은 기업에서 6주 휴가 채택)를 받을 수 있으며, 노사합의 관계에 따라 상이하긴 하나, 대체로 휴가 년도 내 미사용 휴일이 5일 이하로 남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3주 연속 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3개월 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덴마크는 특이하게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근무 기간과 휴가 발생 기간이 다르다. 2017년도 1월 1일부로 채용된 사람이 1년간 일을 하면 유급휴가가 최소 5주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8년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이다. 만약 이 기간 이전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월급에서 '휴가 사용일 x 4.8% x 월급'을 차감할 수 있다.

반대로 퇴사 시에는 퇴사 시점까지 근무로 인해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2017년 12월 31일부로 퇴사할 경우, 2016년 1년간 근무로 발생한 최소 5주 휴가 중(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잔여 휴가 +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발생했을 최소 5주 휴가에 대해 월급 x 4.8%의 금액을 지급해줘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입사 첫해에 휴가 사용일에 대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고용주는 여전히 퇴사 시 피고용인의 잔여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정식으로 고용된 월급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 받는다. 4월이나 5월 중에 직전년도 연봉의 1%를 휴가비(Holiday Allowance)로 지급받는다. 생산직 근로자와 같이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등 월급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총 급여의 12.5%가 휴가비로 주어진다. 병가에 대해서는 월급 근로자인 경우 정상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사 소견을 받을 경우 120일까지 장기 유급병가를 낼 수 있으나, 120일이 지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월급 근로자는 질환의 성격에 대해 고용주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고용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Fit for Work”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요구가 있고 나서 2주 내로 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작성을 해야 하며, 담당의사가 나머지 부분을 작성해 완성하면 된다(질환으로 인해 예상되는 업무 영향에 대해 기술).

월급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월급 근로자의 병가 기간이 30일이 넘어설 경우 지방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보조(reimbursement)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상이 넘어서면, 병가 수당(Sick Pay)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방정부는 최대 52주에 대해 수당을 지급 가능하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지급 가능한 병가수당 최고액은 주당 4,355덴마크 크로네이며, 해당 금액은 매년 고용부(The Ministry of Employment)에 의해 조정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를 가질 수 있는데 출산 전 어머니가 4주, 출산 후 어머니가 14주, 아버지가 2주를 가질 수 있고, 32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50%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이외에 산후 32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준다.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급여 전액을 받을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 혹은 부분적으로나마 회사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보조를 받게 된다. 지방정부로부터 최대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9년 1월 기준 주당 4,355덴마크 크로네이다. 만약 산전 4주 이전에 임신으로 인해 월급 근로자가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병가로 간주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는다

해고

해고되기 3달 전에 사전 통보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된 기간이 길수록 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최대 6달까지 지정되어있다. 고용주가 월급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칙에 따라 사전 통보(레터 형식으로)를 해야 한다. 사무직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생산직(Blue Collar employee)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체결된 협약(collective agreement)에 따라 통보 기간이 정해진다(따라서 회사별로 상이하다).

- 근로일수 6개월 이내: 1달 전 통보
- 근로일수 6개월 초과~3년 이내: 3달 전 통보
- 근로일수 3년 초과~6년 이내: 4달 전 통보
- 근로일수 6년 초과~9년 이내: 5달 전 통보
- 근로일수 9년 초과: 6달 전 통보

고용 계약서상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최소 14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 월급 근로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사직은 통보한 당월로부터 1개월 후에 가능하다. 그러나 인턴이나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월급 근로자가 12년 혹은 17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면 부수적으로 1개월, 3개월분의 추가 월급을 보상(Severance Pay)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부당해고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더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다. 6년 미만일 경우 최대 3개월, 10년 미만일 경우 최대 4개월,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6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그러나 통상 3~4개월 정도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울러, 익년도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 월 급여의 4.8%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까지 3년 5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 통보할 경우(4개월의 통보 기간을 주기 때문에 9월 말부로 해고), 해당 직원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2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2020년 5월 말까지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개월 사전 통보 기간 휴가를 사용하도록 고용주가 강제할 수 있다. 2020년 9개월 근무(2020.1.1~2020.9.30, 사전 통보 기간까지 포함)로 발생하는 휴가 19일(=25일 * 3/4)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퇴직금

12년 근무 시 1달 임금을 지급하며, 17년의 경우 3달 임금을 지급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의사의 권고에 의한 물리치료 등 특수치료는 일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개인 부담이다. 초과 비용은 18세 미만의 경우 모두 정부가 보조해주지만, 그 이상일 경우 어떤 치료이냐에 따라 정부가 최대 25%까지 보조해 준다.

외교관 포함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경우 덴마크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유학생 및 그의 가족의 경우에는 덴마크 국민과 동일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보험

법으로 규정된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노동자는 통상 약 분기별로 1,455덴마크 크로네를 납부하며 1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실직 전 3년간 풀타임으로 일한 시간이 1,924시간에 달한다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 수당은 해당인이 국가공인 실업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의 회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회원인 경우에는 2020년 기준 매월 19,083덴마크 크로네까지 받을 수 있고, 전 직장 월급의 9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한편 아무런 소득이 없고 실업기금 회원이 아니며 자동차나 주택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29세 미만은 7,182덴마크 크로네, 30세 이상은 11,143덴마크 크로네가 주어진다.

산재보험

직원을 고용한 모든 기업은 산재보험비를 지불해야 하며 최초 비용은 2,000덴마크 크로네로 시작된다. 직원 수가 증가할수록 산재보험비는 증가하나 인당 2,000덴마크 크로네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국민연금

덴마크 연금제도는 3층 피라미드 구조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받는 국민연금과 이를 보충하는 의무가입의 직장연금,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는 개인연금으로 나뉜다. 흥미로운 점은 전체 은퇴자금에서 각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연금 70%, 직장연금 20%, 그리고 개인연금 10%로 총당된다는 것이다. 70%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덴마크 국적의 덴마크 거주자 중만 15세 이후부터 연금 수급연령 전까지의 기간 중 최소 3년 이상 덴마크 거주 경험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든지 수령이 가능하다.

물론 덴마크 국민으로서 높은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덴마크 거주 기간에 따라 연금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크게 놀랍지 않다. 만 15세 이후 덴마크 거주 기간이 40년일 경우,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은 65세가 된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1959년 6월 1일 태어난 사람에게는 67세가 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매년 이 금액은 임금 상승률을 토대로 조정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다시 기초연금과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기초연금은 2020년 연소득이 6만 덴마크 크로네를 넘지 않을 경우를 기준으로, 월 6,419덴마크 크로네(부부일 경우 1만 2,965덴마크 크로네)이며, 보조금은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결혼/법적 동거인이 있으면 3,576덴마크 크로네, 없으면 7,122덴마크 크로네로 크게 나뉜다.

이에 따라, 혼자 살 경우에는 월 1만 2,965덴마크 크로네를,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9,570덴마크 크로네를 수령하게 된다. 국가 공인 실업 기금의 회원 중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기 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60세에서 64세 사이에서 조기 퇴직이 가능하며, 퇴직하는 회원들에게는 65세가 돼서 퇴직한 사람이 받는 연금 수령액보다 약간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액은 조기 퇴직 제도에 규정돼 있다.

덴마크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15세에서 퇴직 연령까지의 기간 동안 3년 이상 덴마크에 거주하고 덴마크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EU 지역 시민과 피난민의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는 단일 세율로 2019년 기준 22%이다. 법인세는 면세항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덴마크에 주재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되지만, 비거주 기업은 덴마크에서 발생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된다. 모든 덴마크 기업을 포함한 과세 가능한 영구 설립 기관(예: 지사)을 둔 비거주 외국 기업은 세무기간마다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회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6개월 이내 연차보고서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소득을 토대로 3월 20일, 11월 20일을 기한으로 세금을 2회 납부하는데,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무부에서 추가 소득에 대한 납세를 고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3.1%의 페널티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모든 사람은 연봉에서 8%의 개인 소득세를 낸다.
그 후 추가되는 개인소득세는 연봉 금액에 따라 상이하다.

- 0~46,200덴마크 크로네: 0%
- 46,201~513,400덴마크 크로네: 12.16%(저세율)+평균 24.91% 지방자치세(지방별로 상이)
- 513,401덴마크 크로네~: 12.16%(저세율)+평균 24.91% 지방자치세(지방별로 상이) + 15%(고세율)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덴마크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전 국민은 소득액의 8%를 실업 기금(Labor market contribution), 또 추가로 1%를 건강 보험 기금으로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외에 소득액에 따라 추가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총소득에서 기본 감면액(4만 6,000덴마크 크로네)과 기타 감면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총 세율이 52.02%(교회세, 실업기금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 교회세가 0.41~1.28%(평균 0.88%)인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부하고 싶은 사람만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덴마크는 간접세로 부가가치세, 관세, 물품세, 자동차 등록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25%이며, 관세는 덴마크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물품세는 술, 음료, 담배, 차, 커피, 초콜릿, 물, 자동차 연료, 난방용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에 부과된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는 맥주, 와인, 배터리, 초콜릿, 사탕류, 탄산음료가 있다. 맥주는 1L당 48.74덴마크 크로네가 부과되고(도수 2.8% 미만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음), 와인은 도수에 따라 1L당부되는 특별소비세가 상이하다(도수 1.2%~22%에 대해서만 부과됨). 아이스크림(킬로당 6.98덴마크 크로네, 100mL당 설탕량이 0.5g미만일 경우 킬로당 5.58덴마크 크로네), 초콜릿(킬로당 25.97덴마크 크로네, 100mL당 설탕량이 0.5g미만일 경우 22.08덴마크 크로네)에 대해서는 첨가된 설탕의 양에 따라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일반적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특별한 제한도 없다. 다만 투자자의 거주지 국가가 덴마크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할 가능성은 있다. 덴마크는 유럽 연합 가입국이지만 2000년 국민 선거를 통해 유로가 아닌 자국의 화폐인 덴마크 크로네(Danish Krone, DKK)를 선택했다. 하지만 유로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덴마크 크로네의 화폐 가치는 유로화에 고정되어 크로네의 화폐 가치와 덴마크의 경제 상황은 유럽연합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통화 정책과 유로존의 경제 상황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2019년 6월 기준, 1유로당 7.46038덴마크 크로네 $\pm 2.25\%$ 로 고정)

그리스 금융위기 사태 등 유로존 내 금융 악재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덴마크 내에서도 크로네 화폐 가치를 유로화에 고정하는 것을 멈추자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덴마크 중앙은행은 현재 ECB와의 사전 협의 없이 덴마크 측에서 일방적으로 크로네 화폐 가치 고정을 멈추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초 유로화 약세가 가시화되고, 투기자금 유입에 두 손을 든 스위스가 유로대비 고정환율제를 포기하자, 덴마크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엄청난 자금의 투기자금이 몰렸으나, 덴마크 정부는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방어에 성공했다(양도성 예금증서의 예금금리가 0.25%에서 -0.75% $\rightarrow$ -0.65%, 201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유지). 덴마크는 유로존에 가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IBAN코드(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국제 계좌 번호)에 의거한 자금이체 방식을 사용한다. 덴마크에서 한국 등 해외로 송금할 때는 IBAN코드를 기재해야 하는데, 국내 은행은 IBAN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SWIFT 코드와 계좌번호, 그리고 기타 은행 정보만 있으면 된다.

외환 규제

모든 덴마크 내 거주인은 덴마크 혹은 해외에 현금 구좌를 보유할 수 있으나, 해외에 은행 구좌나 증권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은행명, 구좌 혹은 예금 종류 등을 덴마크 내 거주자임을 밝히는 증명서와 더불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덴마크 국세청에 예금 혹은 구좌 조사를 위임하고, 해외의 은행 기관이 덴마크 국세청으로 이자율 및 잔고에 대한 연간 보고 등을 승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988년 10월 1일 이후부터 덴마크는 해외 투자나 송금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덴마크 회사들은 국제 시장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외환 규제는 없으며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열티, 배당금 및 기술 자문료를 포함해, 소득의 본국 송금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다만 인터넷 송금 시에는 은행별 내규에 따른 규제가 있을 수도 있는 바 이를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덴마크 최대 상업은행인 Danske Bank는 2015년까지 송금 가능한 금액 상한선을 설정해 두었으나,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덴마크는 전체 인구가 약 580만 명(2019년 기준)으로 시장의 절대적인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덴마크의 수입 규모는 972억 달러(2019년 말 기준)로, 비교 열위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고가품 생산에 주력해 화학, 의약, 측정 장비, 디자인, 가구, 오디오, 건설 기술, 발효 기술, 시멘트 공장 설비, 조립식 완구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간재를 수입해 기술, 디자인을 결합시킨 고부가제품 수출에 강점이 있다)

* Designed in Denmark, Made in Asia 전략 보편화 →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재편 <자료원 : 덴마크 통계청, 유로모니터>

소비 성향

덴마크 재무부에 따르면, 덴마크는 1인당 GDP가 2019년 기준 약 5만 3,881달러에 이르는 고소득 국가로 의류, 전기, 전자제품, 신변용품 등은 고급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율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생활용품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바이어나 최종수요 고객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가격이다).

덴마크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 보호 제품,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수 여부 또한 구매 결정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덴마크인들은 세련된 디자인, 최신 유행 스타일에 예민한 편이다.

덴마크는 대표적인 소량 다품종 시장이다. 덴마크는 인구 규모가 작아, 전체 무역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보다는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수입할 때에도 수량이 많지 않아 MOQ로 인해 국내 업체와 계약 불발이 잦다. 바이어들은 소량씩 구매해 시장의 반응을 보가면서 물량을 늘리려고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케이스가 많다.

한편, 일반 소비 제품의 경우 대형 체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 생활용품, 안경 등 일반 소비재의 경우 소수의 대형 체인점이 영향력을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상거래 형태는 매우 보수적이다. 처음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나, 일단 거래 관계를 형성하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려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많은 덴마크 바이어들은 처음 수입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초 상담에서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보통 1~2년 가까이 소요된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갑작스레 테스트 결과가 만족스럽다면서 연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테스트 결과에 만족하면 보통 덴마크나, 더 넓게 스칸디나비아 지역(스웨덴, 노르웨이 등 포함)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CE 등 인증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민감하며, 제조업체가 인증서를 제공하면 이를 제3의 검사기관을 통해 유효한지를 의례적으로 확인한다. 최근 들어 중국업체들이 CE 인증 마크를 위조(형태는 매우 유사하나, Conformance Europeene의 뜻이 아닌 Chinese Export의 의미라고 함)해 부착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참고로, 국내 한 중견업체가 만료된 CE 인증을 갱신하지 않고 수출해 바이어가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 바 있다(국내제조업체가 CE 인증을 갱신받아 다행히 소송이 철회됐다.).

소비재의 경우에는 단순히 '품질+적당히 저렴한 가격'(소위 샌드위치 전략)만으로는 바이어에게 어필이 불가하다. 대부분이 값싼 중국

산에 익숙해져 있어 엄청난 가격 인하가 아닌 이상, 중국산과 필적할 수 없다. 세련된 디자인과 기존 출시된 제품과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고,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기업과 제품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덴마크는 깨끗한 국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며, 많은 덴마크인들이 환경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품의 시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에 따라 친환경, 오가닉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에 맞춰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친환경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선보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Matas에서는 PL 제품 모두에 Swan Eco-Label(친환경제품 인증) 획득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수 여부 또한 덴마크에서는 중요한 이슈이다. 덴마크 정부는 공공분야 사업 추진 시 사회적 책임을 이수한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2009년부터는 사회적 책임 활동 내역을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법제화해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제화 덕분에 덴마크 회사들의 CSR 추진 현황은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90% 기업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동 중인 상황이다.

- 1단계: 간신히 법만 준수
- 2단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부담(extra responsibility)'
- 3단계: 경영활동의 핵심전략으로 활용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상품 중에서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선박, 자동차, 전기. 전자 품목으로 선박이 63%, 자동차가 10% 내외(직수출은 1.4%에 불과하나, 유럽 생산기지에서도 수출된 한국브랜드 점유율을 합칠 경우 10% 수준), 핸드폰이 약 30%(직수출보다 스웨덴 등 제 3국 웨어하우스를 거쳐 덴마크로 수출), 평판 TV(모니터 포함)가 약 50~60% 수준이다.

이 밖에 일부 특수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아직도 수입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다. 과거 한국 상품에 대한 평가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중국 등 개도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중간 정도라는 인식이 주도적이었으나, 한국산 핸드폰(특히 삼성), 평면 TV 등이 최고 제품 반열에 올라서면서 한국 제품 전체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Samsung과 LG의 전자제품은 쉽게 눈에 띄며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화웨이 등 핸드폰 기업들의 제품이 덴마크 시장에서 확대됨에 따라 위협적인 상황이나 여전히 중국 제품보다 품질 면에서 우위라는 평이 다수다.

또한, k-팝의 영향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증가로 화장품, 악세사리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재 제품에 대한 덴마크인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비즈니스 언어

덴마크인의 76%가 모국어인 덴마크어와 함께 영어를 구사한다. 특히,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 지역에서는 덴마크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영어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언어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본적인 인사말과 감사 표현 등은 덴마크어로 알아두면 처음에 대화를 트기에 용이한 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인사는 Hej(하이), 감사 표현은 Tak(탁)이나 Mange Tak(망헨탁) 등으로 표현한다.

2) 바이어 접촉 시 유의사항

덴마크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덴마크 기업들은 가능한 인력을 절감하려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각각이 매우 바쁘며, 특히 회사 고위층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상담 약속을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전에 접촉하는 것이 좋다. 일단 상담 약속이 잡히면 상담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2~3일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덴마크 사람들은 대체로 약속을 잘 지키는 만큼 상대방의 시간 엄수 여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덴마크의 일반적인 퇴근 시간은 오후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이기 때문에, 상담시간은 덴마크 사람들의 근무 시간인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시작해, 오후 4시 반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또한, 금요일은 대체로 많은 덴마크 사람들이 평소보다 근무를 일찍 마치고(오후 3시 이전), 오후 늦게 업무와 관련한 전화 또는 상담을 시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특히 금요일 오후의 경우에는 보통 3시 이전에 퇴근하고, 일부는 1시 전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요일에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 오후보다는 오전에 전화를 시도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바이어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하면서,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 연락을 취하는 목적
-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소개: 영문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효과적이며 일반적인 소개나 스팸성 메일보다는 해당 업체에 맞춤형 내용이 필요(인증여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판매된 레퍼런스 등도 제공하는 것이 도움)
- 한국 업체 담당자의 주소, 전화, 팩스 등 연락처

영어에 서툴다고, 구글 번역기를 돌려 한글을 영어로 단순 변환해 보내는 것은 금물이다. 바이어는 이를 직감적으로 알아보며, 상당히 불쾌감을 느껴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KOTRA가 운영하는 바이코리아 등에 문의가 게재됐을 때, “Feel free to contact me”라고 간단하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어들은 이를 프로답지 못하다고 여겨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회사 소개는 간략하게 하고, 제품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이메일 본문에 쓰고 자세한 정보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라고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어와의 연락 시에는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 등 일반적인 거래 가격 수준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가격 수준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제시하기보다는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덴마크 바이어들은 처음에 제시된 가격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을 위한 가격 폭은 10%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계약 체결

결제 방법은 신축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초기 거래 때에는 바이어에 대해 신뢰가 부족 하기 때문에 L/C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뢰가 구축되면 바이어의 입장에서 거래 조건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L/C 개설에는 은행 수수료가 많이 들고 목돈이

잠기기 때문에 L/C 조건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덴마크 바이어들은 초기에 소량 주문을 통해 시장성 테스트, 품질 및 납기 기한 이행 여부 등 기본 요소들을 점검하고 신뢰가 쌓일 경우 거래 규모를 늘려가기 때문에 초기의 소량 주문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초기 접촉 → 테스트 및 거래에 대한 협상 단계 → 테스트를 위한 소량 주문 → 신뢰 구축 단계 → 대량 주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초기 접촉부터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2년이 소요된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상담 중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덴마크에서는 대부분 회사의 사장도 운전을 직접 하며, 커피도 직접 대접하는 등 엄격한 격식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대했다가는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한 한국업체는 덴마크 업체와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교신하다 덴마크를 방문했는데, 덴마크 업체 측에서 공항 영접을 나왔다. 한국 출장자는 공항 영접을 나온 사람의 직위가 낮다고 생각해 함부로 했는데 나중에 상담장에서 보니 공항 영접 나온 사람이 사장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 제품이 복잡하지 않고, 물량이 매우 크지 않은 경우는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 조건만 합의되면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점 판매 지역과 관련해 덴마크 바이어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생각하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전체의 독점 에이전트 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특별한 바이어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거래를 일단 한 번 해보고 독점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점권을 주기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바이어가 독점 판매권만 보유하고 마케팅을 잘못할 경우 다른 좋은 바이어가 나타나도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최소 주문 수량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능력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 판매 권한의 기한을 너무 길게 설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1년 정도로 설정하고 만족할 경우 갱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 결제, 운송, 품질 조건 등 의무와 권리가 수반되는 조항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분쟁 해결 조항에서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가능한 덴마크 상사 중재 기관이나 덴마크 법원의 판정을 보다는 대한 상사 중 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국제 상사 중재원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 조언을 받아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송금수수료 문제로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바이어와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부분도 사전 협의를 통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덴마크 바이어 중 상당 부분은 덴마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겉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일지 몰라도, 덴마크인 대부분이 이문에 밝다. 절대로 자신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알아서 해줬으니 상대방도 이해해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례로, 한국업체에서는 바이어가 요구하지도 않은 제품 업그레이드를 한다며, 제품 출고 일자를 일방적으로 늦췄다. 미리 양해를 구했다면 바이어가 고마워했겠지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로 쉬핑이 늦어져 바이어는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국내 업체는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응수했지만 바이어 반응은 싸늘했다.

또한, 덴마크 바이어들은 공짜 샘플을 좋아한다. 당신 제품을 팔기 위해 내가 수고하니 당연히 샘플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업체들이 많다.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제조업체가 그만큼 비즈니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거래에 임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는 거래선을 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바이어 성향에 따라 테스트 기간이 다르겠지만, 정말 뭔가 이뤄지려면 적어도 2년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중간에 재촉해도 소용이 없다. 자신만의 페이스에 따라 테스트하고, 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한 후에, 되겠다 싶으면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오더를 한다. 물량도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늘려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덴마크 사람들은 복장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식 석상과 같은 중요한 자리는 정장 차림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상담 때에도 가급적 정장 차림이 좋으나 불가피할 경우는 아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깔끔한 차림이면 된다.

2) 선물

덴마크 사람들은 작은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도 선물(주로 꽃이나 작은 케이크)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상담 때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생일, 크리스마스 등에 축하 카드나 선물을 챙기는 것도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일례로, 2016년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업체 중 국내 업체 S사는 상담이 주선된 바이어들 마다 이름을 새겨 시계를 선물했다. 바이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이를 계기로 S사는 바이어들에게 업체명을 각인시켰고, 자연스레 거래관계로 발전하여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 크리스마스는 한국의 추석과 같은 개념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화된 매우 큰 휴일이다. 그러나 선물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선물의 종류로는 한국 전통 수공예품 등이 좋다.

3) 금기사항

누군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아예 그 사람과의 접촉을 끊는 경우도 많다. 바이어에게 연락을 한 후에는 적어도 1주일 이상 시간을 줄 필요가 있고,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면 연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조바심을 내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례로, 국내 기업 T사는 덴마크 굴지기업과의 미팅 주선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메일을 보내며 미팅 주선을 요청했다. 바이어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메일을 보내고 전화까지 하자 바이어는 절대 미팅을 하지 않겠다는 답을 했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한국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혹은 스팸 메일로 취급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ActiveX 등 별도의 다운로드를 요하는 메일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쉘바이오텍, 프로바이틱스 종주국 덴마크에 성공적으로 안착

- 회사명: 쉘바이오텍
- 주 업종: 유산균원말, 분말제품, 기타 낙농제품 제조
- 홈페이지: www.cellbiotech.com
- 현지법인명: Cell Biotech Europe A/S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형태가 아닌 현지 법인으로 덴마크에 투자한 기업은 쉘바이오텍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쉘바이오텍은 유산균 전문기업으로 유산균이 사람 몸에 들어가 위와 장까지 손실 없이 이동하도록 하는 ‘유산균 이중코팅’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으며 특허를 받은 유산균 원말을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일찌감치 듀오락 브랜드를 선보였지만, 프로바이틱스 전문 ODM 기업으로 입지를 굳힌 덴마크에서 자체 브랜드 론칭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고심이 따랐다. 그러나 마늘, 고추, 생강 등 자극적인 향신료를 섭취하는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한 ‘한국형 유산균’에 유산균 장내 생존율을 높여주는 듀얼 코팅 기술이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 과감히 ODM 계약을 끊고 2014년 자체 브랜드를 출시했다.

이후 술하게 덴마크 현지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기술력을 알려, 출시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덴마크 시장 점유율 15% 확보에 성공했다. 프로바이오틱스 배양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크리스찬한센, 다니스코, 로셀 등 많이 있지만, 종균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일괄 체제를 구축한 글로벌 기업은 쉘바이오텍을 포함해 5곳뿐이다.

특히 1g 안에 1,000억 마리 유산균을 농축하는 기술은 단연 최고 수준이다. 덴마크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유산균 식품 선진시장으로 분류되어, 일류 유산균 기업들이 경쟁하시는 시장에서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복안)과 유럽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프랑스, 독일에서도 ‘듀오락’ 브랜드로 진출했다. 듀오락의 성공적인 덴마크 진출 여세를 몰아,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동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과 전문잡지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2) 하이에어코리아, 덴마크 노벤코 인수로 시장지배력 확대 발판 마련

- 회사명: 하이에어코리아
- 주 업종: 선박공조 전문
- 홈페이지: www.hiairkorea.co.kr, www.novencogroup.com
- 현지법인명: Novenco Group(기존의 상호명 그대로 사용)

2013년 10월 말, 세계 1위 선박공조 전문 회사인 하이에어코리아는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2위 업체인 덴마크 노벤코 그룹을 전격 인수했다. 1947년에 설립된 노벤코는 세계 2~3위를 오가는 덴마크 최대 선박공조회사로 선박 및 해양 플랜트는 물론 터널과 주차장, 건물용 특수 공조부품을 생산하고, 유럽 내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어 사업 영역 확대 및 현지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 하이에어코리아, 덴마크 노벤코 인수로 시장지배력 확대 발판 마련

- 회사명: D사
- 주 업종: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

덴마크 이삿짐용 사다리차 시장은 독일 Bocker사가 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을 만큼, 타 브랜드 진입이 어렵기로 유명하다. 여기에 기술력과 맞춤형 주문제작 서비스로 도전장을 내민 국내 기업이 있다. 2016년 4월 대전 유럽 무역사절단 기업의 일원으로 코펜하겐에 방문한 D사 대표는 Bocker 사의 아성에 굴하지 않았다. 일단 제품을 써보면 사게 된다고 그는 확신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큰 바이어는 필요 없으니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와의 미팅을 주문했다.

KOTRA 코펜하겐 무역관에서는 D사 주문에 따라, 이삿짐 운반 사다리차 개인사업자와 미팅을 주선했고, D사 대표의 예견은 적중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이어 B사는 설명대로 제품이 구현된다면 즉각 사고 싶다는 의견을 표출할 만큼 제품에 대한 기대가 컸다. 무엇보다 맞춤형으로 사다리가 제작된다는 부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Bocker사는 사다리 길이 맞춤 제작이 불가능하다). 그러서는 구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품이 시현되는 모습을 꼭 봐야 했다.

마침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오픈 하우스 프로그램(강소기업 대상으로, 바이어 항공임과 호텔비 일부 지원)이 있어, 코펜하겐 무역관에서는 이를 이용해 바이어를 향한 초청했다. 제품에 대한 열의가 컸던 만큼 빠듯한 일정 가운데서도 방한에 응한 바이어는 실제 제품이 시연되고

제품을 작동한 경험이 많은 오퍼레이터와 얘기를 해본 후 그 자리에서 구매 의사를 굳혔다. 2017년 2월 제품이 드디어 출고되었고, 바이어는 제품에 대만족했다.

4) 혁신 K-Beauty 제품으로 철웅성 덴마크 빗장 풀어

- 회사명: M사
- 주 업종: 화장품

코펜하겐 무역관에서는 대구 한방센터와 협력해 대구지역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 5개사를 초청, 2017년 6월 22일 '한-덴마크 K-Beauty Plaza'를 개최했다. Matas, Normal 등 덴마크 1, 2위 잡화체인뿐만 아니라 대형 백화점 Illum 구매 바이어등을 포함해 약 11개사 참가했다. 이 중 특히 국내 업체 M사의 보톡스 대체제품(기존에 주사기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것을 대체해, 고객들이 주사기 없이 간편하게 스스로 피부에 주입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바이어 관심이 집중되었다.

바이어 팔로우업 과정에서 행복한 문제가 발생했다. 2개 바이어가 서로 독점권을 요구한 것이다. 고심 끝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출물량을 보장할 수 있는 대형 바이어 N사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유럽진출에 필요한 CPNP(Cosmetics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U 내 화장품 등록 포털) 등록이 급선무였다. 바이어는 CPNP 등록이 끝나면 초도 주문을 할 테니 믿고 등록을 마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바이어로부터 아무런 계약 관련 개런티도 받지 못한 채 선뜻 큰 금액을 투자하기는 곤란했다. (패키징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CPNP를 재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컸다)

양측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관 담당 직원이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CPNP 등록이 완료되면 계약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선적 시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1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국내 업체는 흔쾌히 응했고, 1장짜리 신뢰계약서(약 2만5천 달러 상당)를 체결했다. 이어서 무역관 담당 직원은 바이어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자연스레 국내 업체로부터 추가 오더를 유도하기 위해)을 고민하던 중, 국내 업체 제품이 덴마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현지 광고를 게재하는 게 어떻겠냐고 국내 업체에 제안했다. 국내 업체에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흔쾌히 수락했고(바우처서비스 활용), 바이어도 미리 챙겨줘서 고맙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5) 해피엔자임, 유산균 종주국 덴마크에 쇼룸 오픈

- 회사명: 해피엔자임
- 주 업종: 유산균원료 각종 영양제

기존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던 해피엔자임사는 본격적인 덴마크 시장 진출을 위해 코펜하겐 시내 중심가에 다양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쇼룸을 오픈하고 덴마크 시장진출을 확대했다. 유산균을 원료로 중합비타민인 덴프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해피엔자임은 트루 바이타민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 직수입하는 유산균으로 제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유산균이야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덴마크 원료를 광고로 하여 중국시장에 인기몰이하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 면제 협정

한국과 덴마크 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체류 (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혹은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하며, 덴마크에 도착한 후 관할 거주 등록소(CPR Office)에 체류 신고를 해야 한다. 덴마크에서 노동할 수 있는 노동 허가권(Work Permit)은 입국 전 주한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사증과 함께 신청해야 하며, 유학생의 경우 학기 중에는 일정 한도를 넘지 않는 파트타임으로,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권을 거주허가권(Residence Permit)과 함께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한국-덴마크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발효돼, 양국 18~30세의 청년들은 상대 국가에서 최장 9개월 동안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수시 입국할 수 있다. 정식 근무 이전 반드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거주는 12개월까지 할 수 있으나 근무는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은 무조건 1년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발급되는 비자 기간은 비자를 신청한 기간과 신청 시에 제출한 보험의 유효기간 또는 왕복 티켓 구매 시 귀국 비행기 표 날짜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비자 신청 시 귀국스케줄에 유의해야 한다.

2)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아래 9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접수 시 신청자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 주요 거주 목적은 워킹 홀리데이여야 한다.
- 신청 시 신청자의 나이는 만 18~30세여야 한다.
- 가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 신청자는 덴마크 워킹 홀리데이 거주 허가증 소지자가 아니어야 한다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한 번 발급받을 수 있다).
-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
- 돌아오는 비행기 표나 표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 숙식 충당을 위해, 15,000덴마크 크로네 정도의 재정이 덴마크 거주 시점부터 있어야 한다.
- 신청자는 워킹홀리데이 체류 동안 건강보험이 있어야 한다(자료원: 노르웨이 비자 신청센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① 오프라인 신청 (노르웨이 비자신청센터 직접 방문)

서류를 준비해서 다음 노르웨이 비자신청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비자신청서 1부(덴마크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여권 원본 및 복사본(앞뒤 커버 포함해서 모든 페이지, 비자센터에서 당일 복사 시 장당 700원) 각 1부, 여권용 컬러사진 2매(6개월 이내 찍은 사진), 자신 명의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1부(15,000덴마크 크로네(약 280만 원) 이상 보유), 영문 보험증권 원본/사본 각 1부, 영문 항공권 예약증 1부, 신청수수료 및 신청비 등이다(신청수수료 700,000원 현금지참). 먼저 전화로 예약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한다.

- 노르웨이 비자 신청 센터

- 주소: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 전화: 070-4044-0599
- 휴일: 토, 일요일, 한국 공휴일, 부활절 연휴, 크리스마스 등
- 근무 시간: 09:00~16:00(점심시간 13:00~14:00)
- 비자 발급 소요 기간: 1~3개월 중 이메일로 비자 발급(하계휴가와 맞물릴 경우 비자발급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② 온라인 신청

<https://www.nyidanmark.dk/xform/formularer/WH1.form.aspx> 로 가서, 제일 하단에 있는 3가지 옵션 중 "Start a new application without using NemID"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 수수료는 무료이다. 자동으로 User name과 Password가 설정되는데, 이를 기록해두고 다음 단계에서 Reference Number에는 User name을, Password에는 기존 Password를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된다.

3) 노동허가권(거주허가권은 자동 획득) 획득 방법

○ Fast Track Scheme

- 믿을 수 있는 회사(D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Recruitment and Integration, SIRI가 인증한 회사)로부터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고용 만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 The Pay Limit Scheme

- 연봉이 417,793.60덴마크 크로네 이상일 경우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면 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유효한 노동허가권이 발급된다. 고용 만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 Positive List

- 덴마크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엔지니어, 건축기사,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 등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한 직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노동허가권을 내주고 있다. 세부 직업 내역은 웹사이트(www.nyidanmark.dk)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이 명시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이 나온다. 고용 만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 Start-up Denmark(self-employment)

- 덴마크 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이 지정한 전문가 패널이 사업 아이디어를 승인했다는 전제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덴마크 경제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허가권이 발급된다. 레스토랑, 소매점, 무역업 등은 동 허가권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2명이 신규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허가권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 시 3년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하다.

○ Greencard Scheme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일반영주권 발급은 2016년 6월 10일부로 폐지됐다. 다만, 그 이전에 접수된 건에 한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기존에 발급을 받고 연장을 요청할 경우 요건만 충족시키면 연장할 수 있다.

* 코로나 19로 인한 덴마크 국경 통제로 외국인에 대한 덴마크 출입이 금지되었으나, 2020년 7월 15일부로 EU 국가와 한국을 포함한 EU 외 5 국가에 대해서 일반인 국경 통제가 다시 허용되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출입국 시 별도의 유의사항은 없다. 출국 시 여권 및 항공권 검사, 보안 검사를 거쳐 출국할 수 있다. 최근 항공기 탑승 시 보안 검사가 강화돼 기내 휴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많아졌으며 액체류의 경우에는 용기당 100mL를 넘으면 기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짐으로 수화물칸 반입만 가능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어 수하물로 부친다 할지라도 최대 2개만 부칠 수 있고, 기내 반입은 1~2개 내외로 제한된다.

휴대품 과다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다. 18세 이상 성인 1인당 양주 1병, 담배 200개비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총기류, 탄약,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The Embassy of Republic of Korea(주덴마크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45 3946 0400
주소	Svanemoellevej 104, 2900 Hellerup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dk-ko/index.do
비고	영사과 전화: (+45) 3946 0405

〈자료원 : 주덴마크 한국대사관,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덴마크 총리실

전화번호	+45 3392 3300
주소	Prins Jørgens Grd 11, 1218 Copenhagen K
홈페이지	http://www.stm.dk/_a_1644.html

◦ Invest in Denmark(외국인투자기관)

전화번호	+45 3392 1116
주소	Asiatisk Plads 2 DK-1448 Copenhagen K
홈페이지	https://investindk.com/
비고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 덴마크 외교부

전화번호	+45 3392 0000
주소	Asian Space 2 1448 Copenhagen K
홈페이지	http://um.dk/

◦ 덴마크 기업성장부

전화번호	+45 3392 3350
주소	Slotsholmsgade 10-12 DK-1216 Copenhagen K

홈페이지	https://em.dk/
------	---

◦ 덴마크 재정부

전화번호	+45 3392 3333
주소	Christiansborg Slotsplads 1 DK-1218 Copenhagen K
홈페이지	https://uk.fm.dk/

◦ 덴마크 통계청

전화번호	+45 3917 3917
주소	Sejrøgade 11 DK-210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www.dst.dk/en

◦ 덴마크 에너지청

전화번호	+45 3392 6700
주소	Amaliegade 44 1256 Copenhagen K
홈페이지	https://ens.dk/

◦ 덴마크 경쟁 및 소비자청

전화번호	+45 4171 5000
주소	Carl Jacobsens Vej 35 2500 Valby
홈페이지	https://www.kfst.dk/

<자료원 : 덴마크 총리실, Invest in Denmark(외국인투자기관), 덴마크 외교부, 덴마크 기업성장부, 덴마크 재정부, 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에너지청, 덴마크 경쟁 및 소비자청>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6.67DKK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49
2	식품	비빔밥	1인분	25.85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20.25
4	식품	신라면	1봉지	2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5.84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75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75
8	의료	항생제	12정	4.41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3.6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3.6
11	교통	택시요금	10KM	42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44.9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71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34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6.36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8.99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0.65
18	임금	최저임금	월	18.2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0075
20	금리	덴마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6

<자료원 : TV2 Nyheder, SSAM, Q8.dk, DOT, Apotek>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덴마크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로(EURO)를 사용하지 않고 덴마크 통화인 덴마크 크로네(DKK)를 사용하고 있다. 덴마크 크로네 지폐 단위는 1,000덴마크 크로네, 500덴마크 크로네, 200덴마크 크로네, 100덴마크 크로네, 50덴마크 크로네가 있다. 덴마크 지폐에는 셀란섬과 핀섬을 연결하는 그레이트 벨트 이스트 다리(Great Belt East Bridge) 등 주요 다리가 있으며 이는 토목 등 건설분야에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덴마크를 나타낸다.

환전방법

도착한 공항(카스트럽 국제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덴마크의 은행들은 주말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시내에서는 Forex Bank를 이용할 수 있다.

- <https://www.forexbank.dk/Valuta/Valuta-automater/>
- Global Exchange: <https://www.globalexchange.dk/> etc.

신용카드 이용

덴마크는 신용카드 이용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 어느 곳이든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핸드폰에 연동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페이(Mobile Pay)도 사용할 수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코펜하겐의 대중교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코펜하겐시 중심을 순환하는 무인지하철(Metro)은 24시간 운행되며, 코펜하겐 중심지를 벗어나게 되면 전철(S-tog)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나의 승차권으로 모든 교통수단의 최초 탑승 이후 한 시간 내(구간이 먼 경우 2시간까지도 가능) 자유로운 상호 환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동 거리에 따라 구간이 정해져 있으며 구간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출발지와 목적지의 구간을 잘 파악한 후 이동하는 것이 좋다. 덴마크 내 다른 상품의 물가처럼 교통비 또한 매우 비싼 편이다. 최소 구간은 2존(zone)으로 편도가격은 24덴마크 크로네이며 모든 구간을 포함한 최대 구간 all zones의 편도가격은 84덴마크 크로네이다. 어른 소지자 한 명당 12세 미만의 아이를 두 명까지 무료로 데리고 탈 수 있다. 만약 아이가 혼자 타게 될 경우 티켓 가격은 어른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2019년 12월 기준).

만약 7일 이상 코펜하겐에 머무른다면, FlexCard 7-days 구매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 카드를 구매하면 7일 동안 zone에 상관없이 버스·S-tog·메트로를 횡수에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다. 어른 소지자 한 명당 12세 미만 어린이는 2명까지 무료로 데리고 탈 수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카드 하나만 있으면 둘이 탈 수 있다. 어른의 경우 FlexCard 7-days 가격은 620덴마크 크로네이다.

관광목적으로 코펜하겐을 방문했다면, 코펜하겐 카드(Copenhagen card)를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24/48/72/120시간 별로 카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79개 박물관과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더불어 버스, s-tog, 메트로를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고 자동차 렌트, 레스토랑, 여타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격은 어른(16세 이상) 기준, 419덴마크 크로네에서 759덴마크 크로네이다(10~15세는 50% 수준, 0~9세는 어른 동반 시 2명까지 무료로 탑승 가능).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copenhagencard.com/whats-included>를 참조하면 된다.

대중교통 운임 및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영어로 열람 가능).

- 메트로(Metro): www.m.dk
- 전철(S-tog): <http://www.dsb.dk/s-tog>
- 기차: <http://www.dsb.dk/>
- 대중교통 이용 길 찾기 정보: <https://www.rejseplanen.dk/webapp/index.html>

버스

버스의 경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심야버스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교통카드 이용 시 지하철, S-tog와 함께 환승 이용 가능하다. 여행지와 목적지까지 최적으로 노선 검색은 구글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가까운 정류장 검색도 가능하다. 정류장에는 목적지와 도착 예정시간이 나오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모든 곳을 다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택시를 직접 부를 수도 있고 사무실, 호텔 등에서 전화로 부를 수도 있다. 택시 요금은 신용카드로도 지불 가능하다. 그러나 콜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이 더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른 시간부터(10시까지 오라고 했을 경우 10시부터) 미터기가 올라간다는 사실 또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는 덴마크어로 자동안내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콜택시를 부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2019년부터 기본요금 기준이 폐지되어 택시회사마다 다른 기본요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전 기본요금 및 도착지 예상요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o 코펜하겐 시내 택시 전화: (+45) 3535-3535, (+45) 7025-2525

다. 통신

핸드폰

덴마크에는 TDC, 3, Telenor, Telia와 같은 통신사들이 있다. 관광객이나 외국인의 경우, 해당 통신사의 현지 선불 유심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규 무선통신전화 가입을 위해서는 CPR과 여권이 필요하다. 거주증(residence permit)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지참하는 것도 좋다. 개통비로 약 100덴마크 크로네를 납부해야 하고, 전화세는 요금제(최소 130덴마크 크로네)에 따라 월별로 청구된다.

참고로, 무선통신전화기로 한국에 전화를 걸 때 매우 비싸기 때문에(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분당 15덴마크 크로네),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현지 거주자가 한국에 Collect call로 전화를 희망할 경우에는 (8001+ 0382)를 누르면 한국어 안내가 나온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더 쉬운 방법으로는 lebara 유심(USI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에 가면 30덴마크 크로네 내외로 lebara 유심을 구입할 수 있다. 유심을 사서 휴대폰에 장착한 후, 구입한 세븐일레븐에서 바로 금액을 충전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요금제는 3가지 옵션이 있는데, 10시간 통화/3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99덴마크 크로네), 12시간 통화/3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149덴마크 크로네), 15시간 통화/3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199덴마크 크로네)로 구성돼 있다. 단, LTE는 서비스되지 않으니 빠른 인터넷을 원한다면 현지 통신사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와이파이)

관광객과 외국인의 경우, 덴마크에서 인터넷/와이파이 설치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커피숍, 공항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큰 불편은 느끼지 않는다.

라. 관광명소

◦ 아말리엔보 왕궁(Amaliaenborg Palace)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Amalienborg Slotsplads 5, 1257 København K, Denmark
운영시간	10:00~16:00(4월~9월), 11:00~16:00(10월~3월)
휴무일	월요일
명소소개	크리스천보 궁의 화재로 1794년 이래 왕궁으로 사용되고 있다. 프레데릭 5세 기마상을 중심으로 4개의 로 코코 양식 대저택이 위치하며 프레데릭 3세의 왕비 소피에 아말리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궁전으로 여왕 재 궁 시 국기가 게양되며 정오에 근위병 교대식이 진행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왕궁 근처 바닷가에는 벨기에 조경 건축가 장 델로네가 설계한 아말리에하운 정원이 있다.

◦ 크리스찬보 궁(Christiansborg Palace)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Prins Jørgens Grd 1, 1218 København, Denmark
운영시간	개방 시간: 9:00~17:00 - 국회의사당(일): 10:00~11:00(안내 관광만 허용) - 왕실접견실: 9:00~17:00(5월~9월), 10:00~17:00(10월~4월)
휴무일	변동 가능
명소소개	국회의사당, 대법원, 여왕 접견실이 있으며 우측에는 1640년경 세워진 증권거래소 건물(현재는 상공회의 소)이 있다. 왕궁은 코펜하겐의 건설자인 압살론 주교가 건설한 성터 위에 세워져 있다. 현재의 궁은 1906~1907년에 재건립됐으며 원래 건물은 두 차례(1794, 1884) 화재로 전소된 바 있다.

◦ 티볼리 공원(Tivoli Park)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Vesterbrogade 3, 1630 København V, Denmark
운영시간	시즌별 상이(홈페이지 참조: https://www.tivoli.dk/)
휴무일	변동 가능
명소소개	1843년 건설된 티볼리 놀이동산은 미국 디즈니랜드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러 놀이기구 및 26개의 식당, 연주회장, 각종 위락 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야경이 멋있는 것으로 유명하다(4월 말부 터 9월 중순 및 10월 말 할로윈 시즌/12월 말 크리스마스 전후에만 개방).

마. 식당

- 현지식당

○ 캐널 카핀(KANAL CAFEEN)

도시명	코펜하겐
전화번호	(45) 3311 5770
주소	Frederiksholms Kanal 18, Copenhagen K
가격	1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영업시간	월~금 11:30~17:00, 토 11:30~15:00
휴무일	일요일(변동 가능)
소개	대부분의 덴마크 식당은 음식 메뉴가 양식당과 큰 차이가 없으나 덴마크 전통 음식인 스뵈레브뢰라고 하는 호밀 빵 위에 육류, 어류, 달걀이나 치즈 등을 넣은 오픈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다.

○ 스틱스앤스시(Sticks & Sushi)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Nansensgade 59, Copenhagen
가격	1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영업시간	월~목, 일 10:00~22:30, 금~토 10:00~23:00
휴무일	없음(변동 가능)
소개	몇 곳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으며 스시와 꼬치 요리 전문임.

○ 로열 가든(ROYAL GARDEN)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Dronningens Tvaelig gade 30, 1302 Copenhagen
가격	100덴마크 크로네
영업시간	화~일 12:00~22:00
휴무일	월요일 휴무(변동 가능)
소개	나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깔끔해 손님을 접대하기 무난함.

- 한국식당

◦ 미가(Miga)

도시명	코펜하겐
전화번호	(45) 3323 3667
주소	Gammel Kongevej 33B, 1610 Copenhagen
가격	1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영업시간	월~토 12:00~15:00, 17:00~23:00
휴무일	일요일(변동 가능)
소개	코펜하겐 시내에 있으며, 점심, 저녁 시간 모두 영업(일요일은 휴업)을 하며 불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육개장 등 메뉴가 다양함.

◦ 쌤(Ssam)

도시명	코펜하겐
전화번호	(45) 2818 3518
주소	Colbjrnsensgade 7, 1652 Copenhagen V
가격	1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영업시간	월~금 16:00~23:00, 토 12:00~23:00
휴무일	일요일(변동 가능)
소개	코펜하겐 시내(중앙역 근처)에 있으며 비빔밥, 김찌찌개, 덮밥 등 메뉴가 다양함.

◦ 벚꽃(Sakura)

도시명	코펜하겐
전화번호	(45) 3313 1189
주소	Moentergade 22, 1116 Copenhagen K
가격	1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영업시간	월~토 17:00~23:00
휴무일	일요일(변동 가능)
소개	일식, 한식 겸

◦ 모이(Moi)

도시명	코펜하겐
전화번호	(45) 3322 2223

주소	Vesterbrogade 42 1620 Copenhagen
가격	1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영업시간	화~목 17:00~23:00, 금 17:00~24:00, 토 12:00~24:00
휴무일	월요일, 일요일(변동 가능)
소개	한국에 같은 상호명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가 요리하는 한식. 매주 토요일 점심시간에 레스토랑 내에서 재즈 공연을 함.

○ 코판(Kopan)

도시명	코펜하겐
전화번호	(45) 8191 9022
주소	Linnsgade 24, 1361 Copenhagen K
가격	1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영업시간	월~토 12:00~21:00, 일 12:00-18:00
휴무일	없음(변동 가능)
소개	코펜하겐 시내(Norreport 역 근처)에 있으며 호떡과 비빔밥이 주 메뉴임.

〈자료원 : 각 식당 홈페이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호텔 아스토리아(Hotel Astoria)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Banegaardspladsen 4, DK-1570 Copenhagen V
전화번호	(+45) 3342-9900
홈페이지	http://www.astoriahotel-copenhagen.com/
숙박료	1박당 12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소개	코펜하겐 중앙역 바로 옆에 있는 호텔로서 중급 호텔에 속함.

○ 베스트 웨스턴 호텔 시티(Best Western Hotel City)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Peder Skrams Gade 24, DK-1054 Copenhagen K
전화번호	(+45) 3313-0666

홈페이지	https://www.hotelcity.dk/
숙박료	1박당 약 14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소개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뉘하운과 아말리엔 궁과 가까운 위치에 소재한 호텔로, 중급에 속하나 객실 수가 적음.

<자료원 : <https://www.hotelcity.dk/> <http://www.astoriahotel-copenhagen.com/>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o 스틸하우스 코펜하겐(Steel House Copenhagen)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Herholdtsgade 6, c/o Arp-Hansen Hotel Group A/S, 1605 København, Denmark
전화번호	(+45)33 17 71 10
홈페이지	https://www.steelhousecopenhagen.com/
숙박료	1박당 360덴마크 크로네 이상
소개	코펜하겐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깨끗한 시설의 호스텔

<자료원 : <https://www.steelhousecopenhagen.com/>>

사. 치안

치안상황

덴마크의 치안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최근 들어 외국 난민 및 동유럽 인구의 유입 증가, 마약 복용자 증가 등으로 점점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항, 호텔, 관광객이 많은 시내 중심가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2015년 이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주위에서 서성이는 척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냄)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미행해, 한눈을 파는 사이 지갑을 훔쳐간 후 현금을 대량으로 인출해가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 바, 이에 철저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습 소매치기들은 버스에서도 익히 얼굴이 알려져, 이들이 탑승 시 버스 기사가 덴마크어로 소매치기를 지목하여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편, 야간에는 코펜하겐 중앙역 주변의 유흥지역이나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간혹 흉악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코펜하겐 내 크리스티아니아는 1971년 군부대가 빠져나간 부지를 가난한 시민들이 점거하고 세운 자치 마을로 대마초 등 약한 마약사용이 용인되는 지역으로 크리스티아니아에서는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행코스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나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도 주위에 상당수 있어 신변위험의 우려가 있다.

또한 코펜하겐 중앙역 뒤편은 스트립클럽, 성인물 전문점, 매춘여성(덴마크는 1999년 성매매 합법화) 등으로 유명한 홍등가로 저녁에는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덴마크는 무단횡단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2016년 3,439명)이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모든 도로에 다 갖춰져 있어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한 자동차 운전자 실수로 접촉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방 방법으로는 무단횡단을 하지 말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길을 건너며, 불가피하게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좌우를 살핀 후에 길을 건널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들고와야 하며, 사고에 따른 부상 발생 시에 응급상황이면 112, 비응급상황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1318로 전화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류하고 신분증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놓으며, 자동차 사고일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증 확인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향후 보험처리에 사용한다. (현지에서는 당사자 간 현장에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사고 경위를 파악한 보험업체끼리 상호 간에 연락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분실 시에는 주덴마크 대사관을 방문할 경우 임시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연락처와 주소는 아래와 같다.

- 주덴마크 대사관 : + 45 3946 0422 / Svanemøllevej 104, DK-2900 Hellerup

3) 응급전화번호

- 코펜하겐 경찰서: 45-3314-1448 / 114

- 코펜하겐 병원응급실: 1813

- 응급구조대: 112

- KOTRA 무역관: 45-3312 6658 / 주소 : Holbergsgade 14, 3rd 1057 Copenhagen K

아주 일반적인 의약품은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감기,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비상 약품은 여행 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일 또는 주말의 경우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65일 영업을 하는 곳으로 지정된 약국을 찾아야 한다. 휴일 없이 문을 여는 약국은 코펜하겐에 두 곳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Copenhagen Steno Apotek(+45 3314 8266)

- 주소: Vesterbrogade 6C, DK-1620 Copenhagen V.

○ Copenhagen Sonderbro Apotek(+45 3258 0140)

- 주소 : Amagerbrogade 158, DK-2300 Copenhagen S.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덴마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집을 구하는 것이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집을 구한 후에야 거주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우선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덴마크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소를 접촉할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부동산 포털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온라인 부동산 포털에는 집주인이 직접 매물을 올리거나 중개소가 매물을 올리는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덴마크에 도착하기 전부터 부동산 시장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1) 부동산 중개소

- Nybolig
 - TEL: +45 44 55 63 00
 - 홈페이지: <http://www.nybolig.dk/>
- Boligmægleren
 - TEL: +45 35 36 14 14
 - 홈페이지: <http://www.boligmaegleren.dk/>

2) 부동산 포털사이트

- Bolig Portal: <http://www.boligportal.dk/>
- DBA: <http://www.dba.dk/boliger/>
- Findrommate: <http://www.findroommate.dk/>
- Facebook Page

최근에는 집 계약 시 임대인들이 임차료 세 달 치 이상을 보증금으로 요구하는데, 이는 임대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계약해지 시 임대인들이 집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인들이 많다. 수도 코펜하겐은 유럽 각지에서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이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몰려들어 주택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따라서 임차료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심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비싼 가격에 비해 넓고 좁은 경우가 많아 보통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은 비교적 주택난이 심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의 겐 토프트(Gentofte), 헬러럽(Hellerup), 링뷔(Lyngby)등 코펜하겐 근교 수도권 지역에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헬러럽에는 대사관이 밀집돼 있고 코펜하겐 국제학교(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가 위치해 있어서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교외 지역에서 코펜하겐 도심까지 가는 데에는 전차로 20~30분가량 소요된다.

집 임차료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월 4000덴마크 크로네에서 45,600덴마크 크로네까지 천차만별이며 12,000덴마크 크로네~25,000덴마크 크로네 정도의 수준이면 외국인 거주지역에 보통 마음에 드는 수준의 집들을 구할 수 있다.

전화

신규 무선통신전화 가입을 위해서는 CPR과 여권이 필요하다. 거주증(residence permit)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지참하는 것도 좋다. 개통비로 약 100덴마크 크로네를 납부해야 하고, 전화세는 요금제(최소 130덴마크 크로네)에 따라 월별로 청구된다. 참고로, 무선

통신전화기로 한국에 전화를 걸 경우 매우 비싸기 때문에(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분당 15덴마크 크로네),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현지 거주자가 한국에 Collect call로 전화를 희망할 경우에는 (8001+ 0382)를 누르면 한국어 안내가 나온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더 쉬운 방법으로는 lebara 유심(USI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에 가면 30덴마크 크로네 내외로 lebara 유심을 구입할 수 있다. 유심을 사서 휴대폰에 장착한 후, 구입한 세븐일레븐에서 바로 금액을 충전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요금제는 3가지 옵션이 있는데, 10시간 통화/6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99덴마크 크로네), 15시간 통화/10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149덴마크 크로네), 20시간 통화/20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199덴마크 크로네)로 구성돼 있다. 단, LTE는 서비스 되지 않으니 빠른 인터넷을 원한다면 현지 통신사에 가입해야 한다.

전압/플러그

한국과 동일한 220V 플러그를 사용하면 된다.

식수

덴마크 전 지역의 식수는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식료품점이나 마트에서 식수를 구입할 것을 권장하나 현지인들은 수돗물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여 마시기도 한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덴마크는 부가세가 25% 자동차 등록세가 수입 가격의 150%(1만 8,500덴마크 크로네까지는 85%, 그 이상은 150%)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 가격이 우리나라의 약 3배에 달하므로 이를 감안해 정착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신차의 경우 먼저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모델의 자동차 가격을 비교해 적절한 차종을 결정하고, 차종이 결정되면 관련 자동차 딜러를 접촉해 구입하면 된다.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동차 딜러를 접촉해서 구입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나 가격이 약간 비싸다. CPR 번호가 있어야 자동차 구매가 가능하며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 자동차가 수동기어이기 때문에 오토매틱 기어를 구매하려고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당장 딜러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오더 후 독일 등 해외에서 자동차가 생산돼 수입되기 때문에 딜리버리까지 최소 3개월에서 3개월 반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광고를 통해 직접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면 딜러로부터 구입할 때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를 거래하는 www.bilzonen.dk, www.biltorvet.dk 등의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차량가격

차량가격+차량등록세+부가가치세 25%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는 즉각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단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는 것이 좋다(유효기간 1년). 덴마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사와 약속을 정해, 건강증서(Health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발급받으면, 하단의 서류를 지참해 Kommune 내 Borgerservice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건강증서 + 여권 사진 1매
- 거주 증명서
- 한국발급 면허증(영문) 혹은 국제면허증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추가로 필기나 실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운전면허 교환 수수료는 280덴마크 크로네이다 (2019년 기준).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덴마크에서 규모가 가장 큰 3개의 은행은 단스케뱅크(Danske Bank)와 노르디아뱅크(Nordea Bank Danmark), 유스케뱅크(Jyske Bank)이다. 세 은행 모두 북유럽을 기점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에도 지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에서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은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단스케뱅크이다. 노르디아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은행들을 1997년 인수합병을 통해 만든 은행이며, 본사는 스톡홀름에 있다. 유스케 뱅크는 수도인 코펜하겐이 아닌 유틀란드 반도에 위치한 실케 보그(Silkeborg)라는 도시에 본사를 둔 은행인데, 덴마크 전국의 은행들을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간 은행이다.

단스케뱅크는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블랙머니 스캔들로 2019년부터 휴먼계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으며 신규 계좌오픈도 까다로워져 신규계좌 오픈에 많은 시일이 소비되는 편이다.

계좌 개설방법

은행 구좌 개설 시 CPR 번호와, 여권, 직업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CPR 카드를 받기 전까지 Kommune 에서 임시로 발급하는 CPR 번호와 거주지가 표시된 서류가 있으면 대체가 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구좌 개설이 가능한데 3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 시 특수한 업무일 경우도 은행에 따라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 구좌 개설 시 달러 구좌와 덴마크 크로네 구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

Dan Card(현금카드) 단말기가 전국적으로 일반화 돼 있으므로 덴마크 크로네 구좌 개설 시 Dan Card와 VISA 겸용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물품 대금 지불하는데 용이하다. 카드를 신청하면 보통 분기별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청구되는데 보통 분기당 90덴마크 크로네 내외 이다. 카드는 보안을 위해 카드가 먼저 발송된 후 2~3일 후에 비밀번호가 담긴 메일을 발송한다. 이 두 개의 메일을 수령하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카드를 활성화 하면 된다.

한편, 은행에 직접 방문해 텔러를 이용할 경우 단스케 뱅크의 경우에는 회당 40덴마크 크로네가 서비스 수수료로 청구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뱅킹이나 ATM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CIS)

도시명	코펜하겐, 헬러럽
-----	-----------

커리큘럼	CIS는 3세부터 18세까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mes) 교과과정을 따른다. ◦ The Primary Years Programme: 3세부터 11세의 학생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이며, 기초교육부터 미술, 음악 등을 배우며, Grade 5가 되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 The Middle Years Programme: 11세부터 16세의 학생에 해당되는 교과과정이며, 수학, 과학, 디자인, 미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및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기술과 태도에 대하여 배운다. ◦ The Diploma Programme: 16세부터 18세의 학생에 해당되는 교과과정이며, 언어, 영어, 과학, 인류, 수학을 학습하며, 이론 수업을 듣는다.
학비	◦ Application Fee: 2,500덴마크 크로네 ◦ Registration Fee: 25,000덴마크 크로네 ◦ Administration Fee: 2,000덴마크 크로네 ◦ Pre-Kindergarten: 151,000덴마크 크로네 ◦ Kindergarten: 120,000덴마크 크로네 ◦ Grades 1-5: 120,000덴마크 크로네 ◦ Grades 6-7: 128,000덴마크 크로네 ◦ Grade 8: 135,000덴마크 크로네 ◦ Grade 9: 140,000덴마크 크로네 ◦ Grade 10: 153,000덴마크 크로네 ◦ Grades 11-12: 169,000덴마크 크로네
홈페이지	http://www.cis-edu.dk/
비고	주소: Hellerupvej 22-26, 2900 Hellerup 전화: +45 39 46 33 00

◦ International School of Hellerup

도시명	헬러럽
커리큘럼	◦ The Primary Years Programme (PYP): 3세부터 12세의 학생에게 해당하는 교과과정이며,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한다. 언어, 수학, 사회학, 과학, 미술, 대인관계에 대한 기초교육이 진행된다. ◦ The Middle Years Programme: 11- 16세 학생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이다. 덴마크어와 영어로 구성된 언어 및 문학 수업, 언어능력함양 수업(프랑스어, 독일어, 덴마크어, EAL), 과학, 수학, 예술을 배운다. ◦ The IB Diploma Programme (DP): 16 - 19세 학생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이다. 해당 학생은 1) 가장 잘하는 언어, 2) 추가적으로 가능한 언어 3) 인류학 및 사회과학 4) 실험 과학 5) 수학 및 시각예술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여 심화된 학습을 하여야 한다.
학비	월 2,700(유치원 - Grade5)/2,860(Grade6-10)/3,030(Grade11-12)덴마크 크로네(점심, 특별활동비, 교통비, 교재비 제외 / 형제나 자매가 같이 다닐 경우 할인가 적용)
홈페이지	http://www.ish.dk/
비고	주소: Rygaards Alle 131, 2900 Hellerup 전화: +45 70 20 63 68

◦ Rygaards International School(영국계 기독교 학교)

도시명	헬러럽
커리큘럼	◦ The Primary School: 4세부터 11세의 학생에 해당되며, 영어, 수학, 과학, 영어에 해당하는 폭넓은 학습을 받는다. 덴마크어 교육은 3단계로 나뉘어진다. ◦ The Secondary School: 11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에 해당되며, Primary School의 교과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영국의 the National Curriculum을 따른다.

학비	33,000덴마크 크로네/1년(점심, 특별활동비, 교통비, 교제비 제외 / 형제나 자매가 같이 다닐 경우 할인가 적용)
홈페이지	http://rygaards.com/
비고	주소: Bernstorffsvej 54, 2900 Hellerup 전화: +45 39 62 10 53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o Gammel Hellerup Gymnasium (General Upper Secondary School)

도시명	헬러럽
커리큘럼	900여 명의 학생과 100여 명의 교사로 이루어진 학교로 사회학, 인류학, 자연과학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추가 교육비를 통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학비	무상교육
홈페이지	https://www.ghg.dk/international/english/

o Hellerup Skole

도시명	헬러럽
커리큘럼	어린 학생을 위한 학교인 만큼 기초 학습과 태도에 관한 교육을 하며,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력 함양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 협동과 조사 능력 및 예측 전반에 관한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비	무상교육
홈페이지	http://hellerupskole.skoleporten.dk/sp
비고	primary school, 5-16세의 학생을 위한 학교

마. 병원

o Skovhus Private Hospital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Jaegersborgvej 66a, 2800 Kongens Lyngby, Denmark
전화번호	+45 5996 1590
진료과목	일반의학, 정신질환

비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CPR(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카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절차는 우선 지정받은 홈닥터로부터 1차 진료를 받은 후 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전문의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홈닥터의 주소와 연락처는 CPR 카드에 표기돼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약 처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Copenhagen Emergency Doctor Service (+45 70 13 00 41)로 연락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 연락처는 지역별로 다르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번호는 1813이다. 응급 상황일 경우는 112에 전화하거나 바로 종합 병원의 응급실로 가면 된다. 매우 응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료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자료원 : <https://skovhusprivathospital.dk>>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o Magasin du Nord

주소	Kongens Nytorv 13 1095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www.magasin.dk/
비고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포츠, 여가

o Illum

주소	Oslashstergade 52 110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illum.dk/
비고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포츠, 여가

o Royal Copenhagen

주소	Amagertorv 6 116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www.royalcopenhagen.com/dk/da/home
비고	덴마크 고급 식기류 및 자기

o Fields

주소	Arne Jacobsens 230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fields.steenstrom.dk/
비고	대형 쇼핑몰

<자료원 : 각 홈페이지>

- 식품점

◦ Fakta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Dronningensgade 68, 1420 Copenhagen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전체 및 생활용품을 취급함.
비고	덴마크 전역에 체인점이 있음.

◦ Netto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Jarmers Pl. 7, 1551 Copenhagen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전체 및 생활용품을 취급함.
비고	덴마크 전역에 체인점이 있음.

◦ Irma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Ostergade 52, 1100 Copenhagen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전체 및 생활용품을 취급함.
비고	덴마크 전역에 체인점이 있음.

〈자료원 : 각 식료품점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 SATS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Christians Brygge 25, 1219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www.sats.com
소개	덴마크 전역에 위치한 헬스장

◦ Fitness World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Kobmagergade 48, 115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www.fitnessworld.com/dk2/

소개	덴마크 전역에 위치한 헬스장
----	-----------------

<자료원 : <https://www.fitnessdk.dk/>, <https://www.fitnessworld.com/dk2/>>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New year's Day	2020-01-01	새해 축하
Maundy Thursday	2020-04-09	기독교 공휴일
Good Friday	2020-04-10	기독교 공휴일
Easter Monday	2020-04-13	기독교 공휴일
Prayer day: Friday 3 weeks and 5 days after Easter	2020-05-08	덴마크/루터교 공휴일
Ascension Day: Thursday 5 weeks and 4 days after Easter	2020-05-21	기독교 공휴일
Whit Monday, The day after Pentecost	2020-06-01	기독교 공휴일
Danish Constitution Day	2020-06-05	헌법 제정일
Christmas Eve	2020-12-24	기독교 공휴일, 크리스마스 이브
First Day of Christmas	2020-12-25	기독교 공휴일, 크리스마스
Second Day of Christmas	2020-12-26	기독교 공휴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자료원 : https://en.wikipedia.org/wiki/Public_holidays_in_Denmark >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코펜하겐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Holbergsgade 14 3rd Fl., DK-1057 Copenhagen K, Denmark
- 전화: (+45) 3312-6658
- 이메일: info@kotra.dk

* 수령자에 KOTRA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배달이 안될 경우 한국처럼 유선으로 수취자를 찾아주지 않고 한국으로 재배송되기 때문에 우편배송 시 무역관에 통보가 꼭 필요하다.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시
 - 공항에서 코펜하겐 무역관까지 택시요금은 약 300덴마크 크로네 정도이며 약 20분 정도면 KOTRA 코펜하겐 무역관에 도착할 수 있다.
- 버스 이용 시
 - 공항에서 250S 버스를 타고 Christianborg(국회의사당)에서 내린 후 국회의사당 반대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면 우측에 회색의 큰 빌딩 National Bank를 볼 수 있다. 이 거리가 코펜하겐 무역관이 소재하고 있는 Holbergsgade이며 여기서 약 2~3분 정도 도보로 더 이동하면 1층에 Fuego라는 레스토랑이 있다. 코펜하겐 무역관은 이 건물의 4층(현지식으로는 3층)에 있다.
- 지하철 이용 시
 - 공항에서 M2라인을 타고 Kongens Nytorv역에서 하차 후 역 밖으로 나와 Magasin 백화점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걸어오면 전면에 회색의 큰 빌딩 National Bank를 볼 수 있다. 이 거리가 코펜하겐 무역관이 소재하고 있는 Holbergsgade이며 여기서 약 2~3분 정도 도보로 더 이동하면 1층에 Fuego라는 레스토랑이 있다. KOTRA 코펜하겐 무역관은 이 건물의 4층(현지식으로는 3층)에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